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분석 및 고려사항

정훈 | 김재경 | 이희경

2023. 7.

www.kipf.re.kr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훈 세정연구팀장

공동연구원

김재경 세정연구팀 변호사

이희경 세정연구팀 미국회계사

목 차

I. 서론	1
II.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4
1.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개관	4
가. 배경	4
나.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5
다. 향후 과제	6
2.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서식 및 설명지침	9
가. 신고서 서식	9
나. 신고서 설명지침	10
III. GloBE 모델규정과의 비교	62
IV. OECD 의견 수렴	75
1. 의견 수렴 절차 진행	75
2. 온라인 의견 수렴 회의의 주요 내용	76
3. 서면 의견 수렴의 주요 내용	81
가. KPMG	81
나. Siemens	85
다. EY	87
라. MEDEF(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	88
마. NFTC(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89
바. TEMASEK	90

V. 시사점	92
1. GloBE 모델규정과의 비교 검토 결과	92
2.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개선 방향 제안	93
가. 신고 항목 및 요건의 간소화	94
나. 기업의 정보 보호 절차 마련	96
다. 신고 관련 세이프하버	98
라. 상호 검토	100
참고문헌	102
부록	103

표 목차

〈표 II-1〉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서식 구성	9
〈표 III-1〉 GloBE 모델규정 및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비교	62
〈표 IV-1〉 환율 차이로 인한 실효세율 변동 예시	84

그림 목차

[그림 IV-1] KPMG 발표 슬라이드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간소화 방안 예시	78
[그림 IV-2] Temasek 발표 내용	80

I. 서론

-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 경제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라2를 통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였고, 2021년 GloBE(Global Anti-Base Erosion)¹⁾ 모델규정, 주석서 및 사례를 발표함
 - 필라2의 GloBE 규칙은 다국적기업이 각 관할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어도 15%의 실효세율의 글로벌최저한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국제 협력 체계를 제 공하고자 함
 - GloBE 모델규정 제8.1.4조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항목을 제시함²⁾
 -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y)의 식별 정보, 다국적기업 그룹(MNE Group)의 전반적인 기업 구조에 대한 정보
 - 실효세율,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공동기업(Joint Venture) 그룹의 구성원의 추가세액,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추가세액 배분 및 비용 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 추가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
 - GloBE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선택 기록, GloBE 규칙의 행정적 요소를 이 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여타 정보
- 2022년 12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위하여 글로벌최저 한세 정보신고서 문서가 공개됨³⁾

1) 이하 GloBE,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2)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2021, pp. 46~47.

- 다국적기업 그룹이 부담하는 GloBE 납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정보 항목을 식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정보 항목은 문서의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 2023년 2월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문헌을 통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대한 의견을 송부하였으며,⁴⁾ 2023년 3월 OECD는 공청회를 진행함
- 우리나라는 2022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으로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며 제83조에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입법함⁵⁾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제출 기한(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국내구성기업의 제출 의무, 지정국내기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아직 관련 시행령이 입법되지 않아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등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음
- 본 연구는 OECD가 의견 수렴을 위해 제공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OECD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서식 및 지침을 통해 제공 의무가 있는 정보 항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이 OECD에 제공한 의견을 파악함
 - GloBE 모델규정의 내용 중 신고서에 포함된 항목을 비교하고 신고서의 간소화 등 개선 사항을 제안함

3) OECD,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OECD invites comments on compliance and tax certainty aspects of global minimum tax,” <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comments-on-compliance-and-tax-certainty-aspects-of-global-minimum-tax.htm>, 검색일자: 2023. 3. 15.

4)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Public comments received on compliance and tax certainty aspects of global minimum tax,” <https://www.oecd.org/tax/beps/public-comments-received-on-compliance-and-tax-certainty-aspects-of-global-minimum-tax.htm>, 검색일자: 2023. 3. 15.

5) 2024. 1. 1. 시행 예정

- 본 연구는 연구 범위,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문서의 지속적인 공개와 우리나라 입법 상황으로 인하여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함
- 2022년 12월 공개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전에 확정된 GloBE 모델규정, 주석서, 사례까지 반영함
 - 따라서 2023년 7월에 추가로 공개된 수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및 2023년 3월 및 7월에 공개된 행정지침은 반영하지 않음
- 국문 용어는 BEPS대응지원센터에서 공개한 국문 GloBE 모델규정, 주석서, 사례를 기준⁶⁾으로 사용함
 - GloBE 규칙은 2023년 현재 국제조세조정법만 입법된 상태로 법률의 용어가 정보신고서와 관련된 모든 용어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기존 국문 GloBE 모델규정, 주석서, 사례의 용어를 사용함
- 본 연구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등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을 다루는 것이므로 GloBE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배제함

6) BEPS대응지원센터, 「BEPS자료실 - OECD보고서」, <https://www.kipf.re.kr/beeps/data/OECDReport/beDataRoom/list.do>, 검색일자: 2023. 6. 28.

II.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⁷⁾

1.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개관⁸⁾

가. 배경

- BEPS 포괄적 이행체계는 GloBE 규칙의 준수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신고서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다국적기업의 GloBE 부담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보 항목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둠
 - GloBE 모델규정 제8.1.4조는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윤곽을 제시함
 - GloBE 모델규정은 이러한 항목은 향후 간소화된 보고 절차의 개발을 포함하여 포괄적 이행체계에 의해 구체화 또는 확장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함
 - 포괄적 이행체계는 GloBE 협조·정보수집·교환(Co-ordinati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Exchange, CICE)에 대한 종합적인 포커스 그룹을 설립하여 신고서 개발 작업을 진행함⁹⁾

- 포괄적 이행체계는 신고서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 항목 및 설명 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어, 행정적인 요구 사항과 이행 준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고자 함

7) OECD, "Pillar Two – GloBE Information Return," <https://www.oecd.org/tax/beps/public-consultation-document-pillar-two-globe-information-return.pdf>, 검색일자: 2023. 3. 15.

8) OECD,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_ Pillar Two - GloBE Information Return*, 2022a, pp. 3~7.

9) 포커스 그룹은 GloBE 규칙의 기술적인 개발과 정보 교환에 경험이 있는 정책 전문가, 조세행정포럼의 대기업 및 국제 프로그램의 세무 행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포커스 그룹은 신고서의 개발 및 설계에 대한 기업의 조언을 위해 '필라2 기업 자문 그룹(Business Advisory Group)'과 정기적으로 논의를 해 옴

- 포괄적 이행체계의 주된 목적은 과세관청이 GloBE 규칙하에서 구성기업의 부담세액의 정확성을 평가할 때 다국적기업 그룹의 신고 의무가 있는 정보와 세액 산출 방식이 충분히 포괄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
 - 동시에 포괄적 이행체계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불필요한 정보 수집, 산출, 보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각 이행 관할국에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하여 통합적이지 않은 형태의 제출을 여러 번 요구받는 것을 지양하고자 함
-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준비할 의무는 세금 신고 의무와는 별개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규정의 내용은 이미 각 관할국에 존재하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의 설계에 기초하여 각 이행 관할국의 결정 사항임

나.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 GloBE CICE 포커스 그룹의 작업은 다국적기업 그룹이 GloBE 부담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수집해야 하는 일련의 포괄적인 정보 항목을 식별하는 것으로, 신고서에 첨부된 부록A는 A1(정보 항목)과 A2(설명 지침)로 구성됨
- 부록 A1 정보 항목은 GloBE 부담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일반회계정보: 다국적기업 그룹 및 신고 구성기업의 일반 정보
 - 제2장 기업 구조: 다국적기업 그룹의 기업 구조에 대한 정보, 특히 각 구성기업에 IIR 및 UTPR을 적용할 때 그 구성기업의 소유구조,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소유구조의 변경에 대한 정보
 - 제3장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 구성기업들 또는 JV그룹들의 구성원이 소재한 관할국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에 대한 정보, GloBE 모델규정의 관련 조문에 따라 행사된 선택권, 합의된 세이프하버와 연관된 간소화된 이행 절차
 - 제4장 추가세액 배분 및 귀속: 추가세액의 귀속 및 합의된 규칙 적용 순서에 따라 그 추가세액이 납부되어야 하는 이행 관할국에 대한 정보, IIR을 적용하기 위한 각 모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배분대상 지분(Allocable Share of the

Top-up Tax) 및 UTPR 추가세액의 산출, 해당하는 경우 각 UTPR 관할국의 UTPR 비율 산정을 위한 보다 자세한 정보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해석에 명확성 및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록 A2 '설명 지침'을 제공함
- 부록 A1 정보 항목은 GloBE 부담세액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모든 항목을 식별하여 제시함
 - 항목을 분류하고 표로 제시하여 각 항목의 공통된 이해와 더불어 항목 사이의 관계와 GloBE 산출 방식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최종적인 형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이러한 항목을 수집하고 GloBE 산출 방식에 상응하도록 분류하는 것은 신고 및 교환의무가 있는 공통 정보를 개발하는 절차의 첫 단계임

다. 향후 과제

1) 필요한 정보 항목의 식별

- 특정 이행 관할국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에 GloBE 부담세액이 발생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모든 경우에, 모든 구성기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없음
 - 다국적기업 그룹이 GloBE 부담세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하거나 사용하는 실제 정보는 실제 요소의 다양성에 달려 있음
 - 이러한 요소는 관할국 내의 다국적기업 그룹의 운영 본질과 구조, 다국적기업 그룹이 GloBE 부담세액 산출에 대한 간소화 또는 세이프 하버를 활용할지 여부, 다국적기업 그룹이 회계 계정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을 포함함
- 국내법상 신고 또는 정보 교환 등 어떤 방식으로든 과세관청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전히 포괄적 이행체계의 논의 대상임

- 다국적기업 그룹이 GloBE 부담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과세 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상세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조세 정보의 상당한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특히 GloBE 부담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관할국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행 준수 비용을 증가시킴
 - 추가세액과 관련하여 신고서에 제공된 정보가 GloBE 부담세액이 어떻게 산출 되었는지 나타내기에 충분한 내용을 이행 관할국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행 준수 및 행정 비용은 증가됨
 - 과세관청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산출 방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추후에 요구할 수밖에 없음
- GloBE 규칙과 관련한 신고 및 기록 보관 의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함
 - 과세관청이 구성기업의 GloBE 부담세액의 정확성과 GloBE 규칙하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의 세액 산출 시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과,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하여 불필요한 보고 의무 부과를 지양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

2) GloBE 정보의 분할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GloBE 부담세액을 산출할 목적으로 수집할 정보 항목을 식별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모든 정보 항목 및 세액 산출(내역)이 모든 이행 관할국에 필요한 것은 아님
- 모든 이행 관할국이 구성기업의 부담세액 산출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신고한 모든 정보와 세액 산출(내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포괄적 이행체계는 신고서에 신고된 정보의 분할 여부를 고려 중임
 - 예를 들어, 이행 관할국에 소재한 모기업들이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제한된

수의 관할국 내에서만 GloBE 부담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각 이행 관할국의 GloBE 부담세액 산출 및 배분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조와 규칙 적용 순서 요건에 따라 다를 것임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분할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는 중이며 향후 의견 수렴 이후에 결정될 것임

3) 정보 교환

- GloBE 모델규정 제8.1.2조에 따르면, 최종모기업 또는 지정 신고 기업(Designated Filing Entity)이 소재 관할국의 과세관청에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하고, 구성기업의 관할국과 GloBE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적격 권한있는 당국간 협정(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이 발효되는 경우, 각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음
 - GloBE 포괄적 이행체계가 가장 최근에 수렴한 의견들은 단일한 신고 창구와 그에 따른 과세관청 사이의 GloBE 정보 교환에 대하여 강한 지지를 표명함
 - 이와 같이 중앙 집중화된 신고 의무, 과세관청이 수집한 GloBE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 양자 또는 다자 간 ‘권한있는 당국간 협정’ 체계 및 XML스키마와 같은 정보 교환 IT 해결책의 개발 작업이 지속될 것임

4) 위험 평가 및 후속 정보 요청

- 포괄적 이행체계는 다른 방식의 행정 체계를 개발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
 - 추후 협조와 GloBE 규칙의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행정 체계를 개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신고서의 정보에 기반하여 식별된 위험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기 위한 협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이와 동일하게 이행 관할국은 세무조사와 같은 향후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협조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2.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서식 및 설명지침

가. 신고서 서식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서식은 본 보고서의 부록(엑셀 파일)에 제시되어 있음
 - “제1장 일반회계정보”에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반적인 정보를 기재함
 - “제2장 기업 구조”에 최종모기업과 그 외 구성기업, 그리고 제외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기재함
 - “제3장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에 다국적기업 그룹이 작성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를 기재함
 - “제4장 추가세액 배분 및 귀속”에 GloBE 규칙에 따라 납부되어야 하는 추가세액의 산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기재함

〈표 II-1〉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서식 구성

1. 일반회계정보	1.1 다국적기업 그룹 및 보고 회계연도
	1.2 신고 구성기업의 식별
	1.3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반회계정보
2. 기업 구조	2.1 최종모기업
	2.2 (최종모기업이 아닌) 그룹 기업들 및 JV그룹의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1 구성기업 및 JV그룹의 구성원 2.2.2 제외기업
	2.3 보고대상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기업 구조에 대한 변경사항
	3.1 관할국의 성격
3.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	3.2 관할국에 대해 적용되는 관할국별 예외(추가세액이 영(0)으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1 세이프하버 관할국 선택 3.2.2 최소 적용배제 선택
	3.3 관할국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1 관할국별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3.3.2 이연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관할국별 산정 3.3.3 관할국별 선택(해당하는 경우)

〈표 II-1〉의 계속

3.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	3.4 구성기업별 산정
	3.4.1 GloBE 손익
	3.4.2 조정된 대상조세
	3.4.3 구성기업 선택(또는 JV그룹에 적용되는 선택)
	3.4.4 국제해운업이익 제외
	3.4.5 기타 회계기준
	3.5 국제 활동 초기 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적용 가능한 경우)
4. 추가세액 배분 및 귀속	4.1 IIR 또는 UTPR 적용과 관련한 저세율 관할국
	4.1.1 저세율 관할국의 정보
	4.1.2 저세율 관할국과 관련한 IIR의 적용
	4.1.3 저세율 관할국과 관련한 총 UTPR 추가세액 금액
	4.2 UTPR하의 추가세액 배분

자료: 저자 정리

나. 신고서 설명지침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설명지침 또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반회계정보

이 부분의 기능 - 일반회계정보

‘일반회계정보’는 다국적기업 그룹과 신고 구성기업을 함께 식별하며, 최종모기업의 보고 회계연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정보를 제공함

1.1. 다국적기업 그룹 및 보고 회계연도

Note 1.1.1: 신고 구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명칭을 기재함

Note 1.1.2: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기재함

Note 1.1.3: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재함

Note 1.1.4: 신고 구성기업은 본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이하 “GIR”)가 수정신고인 경우 “예”를 기재함

1.2. 신고 구성기업의 식별

Note 1.2.1, 1.2.2: 신고 구성기업은 GIR을 제출하는 기업임. 다수의 신고 구성기업이 GIR을 제출하는 경우, 각 신고 구성기업이 별도의 GIR을 각자 제출함

Note 1.2.2, 1.2.3, 1.2.4, 1.2.5: 신고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공란으로 둠

Note 1.2.3: 신고 구성기업은 신고 관할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상 사용하는 납세자식별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TIN”)를 기재함.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TIN과 기능상 동일한 사업/법인 등록 코드/번호 등을 기재함

Note 1.2.4: 다음 중 관련된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함: 지정 신고기업, 지정 내국기업, 구성기업

Note 1.2.5: 신고 구성기업은 소재한 관할국의 알파벳 두 자리 국가코드를 ISO 3166-1 Alpha 2 기준에 맞추어 기재함

1.3.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반회계정보

Note 1.3.1: 신고 구성기업은 제10장¹⁰⁾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정의인 (a)항, (b)항, (c)항, (d)항 중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해당되는 항을 기재함. (d)항에 해당하는

10) GloBE 모델규정 제10장을 지칭함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식별을 위해 합리적이며 신의칙에 따른 노력을 기울여야 함

Note 1.3.2: 신고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기준을 기재함.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GloBE 규칙 목적상 적용되는 공인 재무회계기준을 기재함

Note 1.3.3: 신고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되는 통화를 기재함.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GloBE 규칙 목적상 적용되는 통화를 기재함

2) 기업 구조

이 부분의 기능 - 기업 구조

기업 구조 정보는 GloBE 규칙 적용과 GloBE 규칙이 적용되는 구성기업 식별 그리고 GloBE 규칙하에서 추가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하는 구성기업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음. 이 부분은 표 2.1에서 최종모기업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표 2.2.1에서 구성기업과 JV그룹 구성원의 기업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표 2.2.2에서는 모든 제외기업을 식별하며 해당 제외기업들이 제외사유를 제공함. 표 2.3은 보고 회계연도 중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기업) 및 JV그룹 구성원의 모든 기업 구조 변경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2.1. 최종모기업

Note 2.1: 표의 정보는 보고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Note 2.1: 다국적기업 그룹이 다수 모기업 다국적기업 그룹인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각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이 표를 작성함

Note 2.1.1: 신고 구성기업은 GloBE 목적상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관할국의 알파벳 두 자리 국가코드를 ISO 3166-1 Alpha 2 기준에 맞추어 기재함

Note 2.1.2: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에 대해 최종모기업 관할국에 유효한 적격 소득산입규칙(Qualified Income Inclusion Rule, 이하 “QIIR”), 적격 비용공제부인 규칙(Qualified UTPR, 이하 “QUTPR”), 및/또는 적격 내국 최저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이하, “QDMTT”)가 있는지 여부를 기재함.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i) 다른 관할국에 소재한 저율과세 구성기업에 대해서만 QIIR 적용 (ii) 다른 관할국과 모회사의 관할국에 소재한 저율과세 구성기업 모두에 QIIR 적용 (iii) QUTPR (iv) QDMTT.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함

Note 2.1.1, 2.1.2: 최종모기업이 제외기업인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이 란을 공란으로 둠

Note 2.1.3: 신고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명칭을 기재함

Note 2.1.4: 신고 구성기업은 GloBE 목적상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관할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상 사용하는 최종모기업의 TIN을 기재함.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2.1.5: 신고 구성기업은 신고가 이루어지는 관할국(“신고 관할국”)에서 최종모기업에 대해 발급된 TIN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함

Note 2.1.6: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구성기업, 도관기업-조세투명기업, 도관기업-역혼성기업, 혼성기업, 주된 기업, 투자기업, 보험 투자기업, 제외기업.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선택함

Note 2.1.7: 최종모기업이 제외기업인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선택하여 기재함: (i) 정부기관 (ii) 국제기구 (iii) 비영리기구 (iv) 연금펀드 (v)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vi) 최종모기업인 투자기구

2.2. (최종모기업이 아닌) 그룹 기업들 및 JV그룹의 구성원

2.2.1. 구성기업 및 JV그룹의 구성원

Note 2.2.1: 표의 정보는 보고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Note 2.2.1.1: 신고 구성기업은 전기 보고 회계연도에 대해 제출한 GIR의 2.2.1.2¹¹⁾부터 2.2.1.18까지의 정보가 아직 유효하며 완전한 경우 “아니오”를 기재함. “아니오”를 기재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2.1.1.2부터 2.2.1.18까지 공란으로 둬. “예”를 기재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모든 구성기업 및 JV그룹의 구성원에 대하여 2.2.1.2¹²⁾부터 2.2.1.18까지 기재함

Note 2.2.1.2: 신고 구성기업은 GloBE 목적상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이 소재한 관할국의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를 ISO 3166-1 Alpha 2 기준에 맞추어 기재함. 이 행은 최종모기업, JV 또는 JV 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 관할국에 소재한 경우 최종모기업 관할국을 포함할 수 있음. 신고 구성기업은 무국적 구성기업에 대해 “무국적(Stateless)”을 기입함

Note 2.2.1.3: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i) 다른 관할국에 소재한 저율과세 구성기업에 대해서만 QIIR 적용 (ii) 다른 관할국과 모회사의 관할국에 소재한 저율과세 구성기업 모두에 QIIR 적용 (iii) QUTPR (iv) QDMTT.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함

11) 원문의 오기를 수정하여 기술함

12) 원문의 오기를 수정하여 기술함

Note 2.2.1.4: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명칭을 기재함

Note 2.2.1.5: 신고 구성기업은 신고 관할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상 사용하는 TIN을 기재함.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2.2.1.6: 신고 구성기업은 GIR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관할국에서 관련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에 대해 발급된 TIN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함

Note 2.2.1.7: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구성기업, 도관기업-조세투명기업, 도관기업-역혼성기업, 혼성기업, 고정사업장, 주된 기업, 소수지분 모기업, 소수지분 종속기업, 소수지분 구성기업, 투자기업, 보험 투자기업, JV, JV 종속기업.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함

Note 2.2.1.8: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소유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거나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소유지분을 제외기업 또는 비그룹 구성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기업 유형을 기재함.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불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최종모기업, 구성기업, JV, JV 종속기업, 제외기업(합산), 비그룹 구성원(합산). “제외기업(합산)” 및 “비그룹 구성원(합산)”의 경우 합산하여 보고함

Note 2.2.1.9: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에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TIN을 기재함(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기재함). 최종모기업이 아닌 제외기업 및 비그룹 구성원은 합산되어 보고되므로(예를 들어, “제외기업(합산)”, “비그룹 구성원(합산)”) TIN을 기재하지 않음

Note 2.2.1.10: 신고 구성기업은 2.2.1.8에 보고된 구성기업, JV, JV 종속기업, 제외기업 및 비그룹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보유한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소유지분을 백분율로 기재함. 신고 구성기업은 비그룹 구성원이 보유한 소유지분은 합산하여

기재함. 이때 다수의 제외기업이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에 대해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모든 제외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을 합산하여 기재함. 그룹 기업이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소유지분을 하나 이상의 제외기업을 통해서 또는 비그룹 구성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그룹 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을 기재할 뿐만 아니라 제외기업 또는 비그룹 구성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 또한 함께 기재함. 이때 그룹 기업의 소유지분 산정에 포함된 제외기업 또는 비그룹 구성원이 직접 보유한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소유지분은 중복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구성기업이 고정사업장인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2.2.1.9의 주된 기업을 보고하며 2.2.1.10에 100%로 기재함

Note 2.2.1.11부터 2.2.1.15: QIIR이 구성기업이 소재한 관할국에서만 적용되며 구성기업이 부분소유 모기업 또는 중간 모기업인 경우, 이 정보는 구성기업에 대해서만 기재함. 이 정보는 다른 구성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소유지분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JV그룹 또는 기업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러한 그룹 기업들이 잠재적 모기업이 아니기 때문임

Note 2.1.1.11: 신고 구성기업은 적용되는 모기업의 유형을 기재함.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함(해당하는 경우): 부분소유 모기업, 중간 모기업

Note 2.2.1.12: 최종모기업이 QIIR을 적용해야 하거나 모기업에 대해 (직·간접적)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간 모기업이 QIIR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제2.1.3조¹³⁾의 예외 조항이 적용됨. 예외 조항이 적용될 경우, 모기업은 QIIR을 적용하지 아니함

Note 2.2.1.13: 신고 구성기업은 GloBE 목적상 다른 중간 모기업이 소재한 관할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상 사용하는 TIN을 기재함.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기재함

Note 2.2.1.14: 부분소유 모기업의 정의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13) GloBE 모델규정 제2.1.3조를 의미함. 이하 조문 표시는 GloBE 모델규정의 조문을 지칭하는 것임

인이 해당 구성기업의 이익의 20% 이상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며,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모기업은 부분소유 모기업이 됨

Note 2.2.1.15: 제2.1.5조에 따라, 부분소유 모기업이 보고 회계연도에 적격 IIR을 적용해야 하는 다른 부분소유 모기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완전 보유되는 경우, 부분소유 모기업은 IIR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제2.1.5조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GloBE 목적상 다른 부분소유 모기업이 소재한 관할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상 사용하는 TIN을 기재함.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기재함

Note 2.2.1.16: “예”라고 답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2.2.1.17부터 2.2.1.18까지 공란으로 둠

Note 2.2.1.17: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보유한 총 소유지분 대비 합산 소유지분을 백분율로 기재함. QIIR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의 합산 (직·간접) 소유지분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에 대해 QIIR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의 (직·간접) 소유지분의 합계임.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저율과세 소득에 대해 QIIR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이 없는 경우 총 합계는 영(0)이 됨. 이때 (제2.1.3조 또는 제2.1.5조에 따라 IIR 제외대상이 아닌 중간 모기업 또는 부분소유 모기업을 통해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이 IIR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유지분은 총 합계 산출 목적상 한 번만 포함함

Note 2.2.1.17: 신고 구성기업은 JV그룹 구성원의 총 추가세액 대비 해당 JV그룹 구성원의 추가세액에 대한 배분대상 지분 합계를 백분율로 기재함. QIIR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배분대상 지분 합계는 저율과세 JV 또는 JV 종속기업에 대해 QIIR을 적용해야 하는 각 모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배분대상 지분의 합계임.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저율과세 소득에 대해 QIIR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이 없는 경우,

합계는 영(0)이 됨. IIR을 적용해야 하는 또 다른 모기업을 통해 저율과세 JV 또는 JV 종속기업에 대해 모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추가세액에 대한 배분대상 지분은 총 합계 산출 목적상 한 번만 포함함

Note 2.2.1.18: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JV그룹 구성원의 최종모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배분대상 지분 각각)이 해당 구성기업(JV그룹 구성원 각각)에 대해 QIIR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의 합산 소유지분(배분대상 지분 각각)보다 큰지 여부를 기재함

2.2.2. 제외기업

Note 2.2.2: 표의 정보는 각 제외기업에 대해 보고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제외기업은 제1.5.1조 또는 제1.5.2조에 정의된 그룹 기업을 의미함

Note 2.2.2.1: 신고 구성기업은 전기 보고 회계연도에 대해 제출한 GIR의 2.2.2.2부터 2.2.2.3까지의 정보가 아직 유효하며 완전한 경우 “아니오”를 기재함. “아니오”를 기재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2.2.2.2부터 2.2.2.3까지 공란으로 둬. “예”를 기재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모든 제외기업에 대하여 2.2.2.2부터 2.2.2.3까지 기재함

Note 2.2.2.2: 신고 구성기업은 각 제외기업의 명칭을 보고함

Note 2.2.2.3: 신고 구성기업은 각 제외기업의 유형을 기재함.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불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정부기관,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최종모기업인 부동산 투자기구, 제1.5.2조 (a)항에 따라 제외기업이 보유한 기업, 제1.5.2조 (b)항에 따라 제외기업이 보유한 기업

2.3. 보고대상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기업 구조에 대한 변경사항

Note 2.3: 보고 회계연도 중 어떠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기업) 또

는 JV그룹의 구성원에 기업 구조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이 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Note 2.3.1: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 중 소유 구조 또는 지위에 변경이 발생한 모든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기업, 예를 들어 제외 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을 기재함

Note 2.3.2: 신고 구성기업은 GloBE 목적상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이 소재한 관할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상 사용하는 TIN을 기재함.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기재함

Note 2.3.3: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소유 구조 또는 지위에 대한 모든 변경의 유효일자(일-월-연 순서로)를 기재함.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에 보고 회계연도 중 1회 이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각 변경 사항에 대해 별도의 행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Note 2.3.4: 신고 구성기업은 변경 발생 직전 일자의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GloBE 목적상 관련된 지위를 기재함.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구성기업, 도관기업-조세투명기업, 도관기업-역혼성기업, 혼성기업, 고정사업장, 주된 기업, 소수지분 모기업, 소수지분 종속기업, 소수지분 구성기업, 투자기업, 보험 투자기업, JV, JV 종속기업, 부분소유 모기업, 중간 모기업, 최종모기업, 제외기업, 비그룹 구성원.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함

Note 2.3.5: 신고 구성기업은 거래 이후 변경 발생 일자의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GloBE 목적상 관련된 지위를 기재함.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구성기업, 도관기업-조세투명기업, 도관기업-역혼성기업, 혼성기업, 고정사업장, 주된 기업, 소수지분 모기업, 소수지분 종속기업, 소수지분 구성기업, 투자기업, 보험 투자기업, JV, JV 종속기업, 부분소유 모기업, 중간 모기업, 최종모기업, 제외기업, 비그룹 구성원.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함

Note 2.3.6부터 2.3.8: 신고 구성기업은 변경 이전 제외 기업이었던 제외 기업에 대하여 2.3.6 및 2.3.7의 행을 작성하지 아니함. 신고 구성기업은 변경 이후 제외 기업인 제외 기업에 대하여 2.3.6 및 2.3.8의 행을 작성하지 아니함

Note 2.3.6: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이 고정사업장인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2.3.6에 주된 기업을 보고하며 2.3.7 또는 2.3.8에 100%를 기재함

Note 2.3.6: 신고 구성기업은 거래일자 직전 일자에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모든 구성기업, 그룹 기업, 제외 기업, JV그룹 구성원 또는 비그룹 구성원을 기재함. 최종모기업이 아닌 제외기업 및 비그룹 구성원은 합산하여 기재함(예를 들어, “제외기업(합산)”, “비그룹 구성원(합산)”). 또한 신고 구성기업은 거래일자 직전 일자에 제외기업 또는 비그룹 구성원을 통해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기업)을 통해 소유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그룹 기업을 기재함

Note 2.3.7: 신고 구성기업은 2.3.6에서 보고된 변경 직전 일자의 구성기업, 제외기업, JV그룹 구성원 및 비그룹 구성원이 보유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에 대한 소유지분을 백분율로 기재하며 Note 2.2.1.10에 설명된 지침을 따름

Note 2.3.8: 신고 구성기업은 2.3.6에서 식별된 변경 이후 일자의 구성기업, 제외기

업, JV그룹 구성원 및 비그룹 구성원이 보유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에 대한 소유지분을 백분율로 기재하며 Note 2.2.1.10에 설명된 지침을 따름

3)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

이 부분의 기능 -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

3.1부터 3.4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작성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 GloBE 규칙과 같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관할국별 접근 방식을 따름. 이에 따라 신고 구성기업은 관련된 정보를 관할국별로 보고해야 함. 특정 상황하에서는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산정은 하위 그룹별로 수행될 수도 있음. 따라서 3.1은 그러한 하위그룹의 식별을 담고 있음. 3.2는 추가세액 산정에 대한 예외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음. 예를 들어, 세이프하버 또는 최소 적용배제의 적용으로 추가세액이 영(0)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음. 3.3은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과 관련된 관할국별 정보를 담고 있음. 3.4는 기업 수준에서의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음

3.5는 UTPR(제9.3절¹⁴) 목적상 다국적기업 그룹이 제외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함. 제9.3절이 적용되며 어떠한 그룹 기업도 QIIR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추가세액이 영(0)으로 조정되는 관련된 관할국에 대해서는 3.1부터 3.4까지 보고하지 않아도 됨

3.1. 관할국의 성격

Note 3.1: 신고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 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하거나 JV그룹 구성원이 소재한 각 관할국에 대해 이 정보를 기재함

14) GloBE 모델규정 제9.3절을 지칭함

Note 3.1.1: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의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를 ISO 3166-1 Alpha 2 기준에 맞추어 기재함. 신고 구성기업은 각 무국적 구성기업에 대해 “무국적”을 기재함

Note 3.1.2: “하위 그룹”은 각 실효세율 산정마다 보고되어야 함. 이 행에는 여러 개의 하위그룹이 보고될 수 있음.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구성기업, 소수지분 하위그룹(어떤 소수지분 하위그룹인지 명시), 단일 소수지분 구성기업, 투자기업, 및/또는 JV그룹(어떤 JV그룹인지 명시), 무국적 구성기업. 단일 소수지분 구성기업은 어떠한 소수지분 그룹의 일부도 아닌 소수지분 구성기업을 의미함. 투자기업 또한 투자기업으로 인정되는 JV 또는 JV 종속기업을 포함하지만 제7.5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진 투자기업은 포함하지 않음. 소수지분 하위그룹은 JV그룹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JV 하위그룹 또는 다수의 소수지분 하위그룹들이 관할국에 소재한 경우, 각각은 다른 명칭으로 구분되어 보고되어야 함. 신고 구성기업은 일정 예외 조항(3.2 참조)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각 하위그룹에 대해 3.3과 3.4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함

3.2. 관할국에 대해 적용되는 관할국별 예외(추가세액이 영(0)으로 감소)

이 부분의 기능 - 이 관할국에 대해 적용되는 관할국별 예외

이 부분은 추가세액 산정에 대한 예외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음. 예를 들어, 세이프하버 또는 최소 적용배제의 적용으로 추가세액이 영(0)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음. 3.2.1에 따라, 경과 CbCR 세이프하버 적용을 선택한 신고 구성기업은 다국적 기업 그룹이 관할국에서 해당 세이프하버 적용대상인지 증명하기 위한 정보를 보고함. 이 부분은 필요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세이프하버(예, 영구적 세이프하버)를 반영하도록 확장될 수 있음

이와 유사하게 3.2.2에 따라, 최소 적용배제 적용을 선택한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이 최소 적용배제 적용 대상인지 증명하기 위한 정보를 보고함

3.2.1. 세이프하버 관할국 선택

Note 3.2.1.a: 신고 구성기업은 선택의 범위를 보고함. 필요시, 표 3.1.2에 제공된 목록에서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함.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함

Note 3.2.1: 경과 CbCR 세이프하버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경과 CbCR 세이프하버에서 다루어지는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과 관련된 3장의 표를 작성하지 아니함(이하의 주석에 별도 언급된 경우는 제외). 또한 세이프하버 관할국은 4장의 목적상 경과 CbCR 세이프하버에서 다루어지는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에 관하여 저율과세 관할국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Note 3.2.1: 이 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적격 재무제표가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별도 재무제표인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표 3.4.5를 작성함

Note 3.2.1.1: 신고 구성기업은 이 관할국에 대해 적용을 선택한 기준을 기재함. 신고 구성기업은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a) 최소 기준; (b) 간소화된 실효세율 기준; 또는 (c) 경상이익 기준. 항목 (c)를 선택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합의된 세이프하버에 따라 관련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과 관련하여 3.3.1.3(실질기반 소득제외 관련)도 작성함

Note 3.2.1.2: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에 대해 다국적기업 그룹의 적격 국가별 보고서(또는 JV그룹 구성원의 적격 재무제표)에 보고된 바와 같이 관할국의 총 수익을 기재함. 3.2.1.1에서 항목 (b) 또는 (c)를 선택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3.2.1.2를 작성하지 아니함

Note 3.2.1.3: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에 대해 다국적기업 그룹의 적격 국가별 보고서(또는 JV그룹 구성원의 적격 재무제표)에 보고된 바와 같이 관할국의 세전 이익(손실)을 기재함

Note 3.2.1.4: 소득세비용에는 합의된 세이프하버에 따른 관련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이 모두 포함됨. 3.2.1.1에서 항목 (a) 또는 항목 (c)가 선택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3.2.1.4를 작성하지 아니함

3.2.2. 최소 적용배제 선택

Note 3.2.2.a: 신고 구성기업은 최소 적용배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보고함. 신고 구성기업은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구성기업, JV그룹(어떤 JV그룹인지 명시함. 관할국에 대해 최소 적용배제 적용의 선택이 하위그룹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하위그룹에 대해 표를 작성하며,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의 해당 하위그룹에 대해 3장의 어떠한 표도 작성하지 아니함

Note 3.2.2: 투자기업과 무국적 구성기업은 최소 적용배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이 두 가지 유형의 기업들의 GloBE 수익과 GloBE 이익·손실은 제5.5.3조의 산정에서 제외됨. 소수지분 구성기업의 GloBE 수익과 GloBE 이익·손실은 소재한 관할국의 평균 GloBE 수익과 평균 GloBE 이익·손실 산정의 목적상 다른 구성기업들의 GloBE 수익 및 GloBE 이익·손실과 합산됨

Note 3.2.2: 적격 관할국에 대해 신고 구성기업이 최소 적용배제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에 대해(적용되는 경우) 표 3.2.2 및 표 3.4.5를 제외하고 3장을 작성하지 아니함

Note 3.2.2.1: 신고 구성기업은 3장의 조정 이전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및 JV그룹 구성원의 수익 합계를 이 란에 기재함

Note 3.2.2.2: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GloBE 수익의 합계를 이 란에 기재함

Note 3.2.2.3: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합산 재무회계 순이익·손실(FANIL)을 이 란에 기재함

Note 3.2.2.4: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GloBE 이익·손실의 합계를 이 란에 기재함

Note 3.2.2.1.a-c: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 (적용 가능한 경우) 전기 회계연도, (적용 가능한 경우) 이전 두 번째 회계연도 각각에 대해 관련된 금액을 기재함

Note 3.2.2.1.d: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3개년 평균은 1역년 대비 전기 회계연도에서 다루어지는 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매출 및 수익(또는 손실) 산정을 조정하여 산정됨

3.3. 관할국별 산정

이 부분의 기능 - 관할국별 산정

이 부분은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과 관련된 관할국별 정보를 담고 있음

3.3.1에서는 모든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재무회계 순이익·손실 및 당기법인세비용의 모든 조정 내역을 관할국별로 상세히 제공하며, 이를 통해 관할국의 조정된 대상조세뿐만 아니라 관할국의 순 GloBE 이익·손실을 식별함. 또한 3.4에서는 각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에 대해 이러한 모든 조정사항을 자세히 제공함. 간소화될 경우 구성기업 수준의 정보의 포함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이 절은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 및 관할국에서 적용되는 QDMTT하에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질기반 소득제의 산정에 관한 정보도 포함함

3.3.2는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및 재계산 메커니즘의 적용과 같은 이연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관할국별 산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또한 경과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도 담고 있음

마지막으로 3.3.3은 신고 구성기업이 선택한 관할국별 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함

Note 3.3.a: 신고 구성기업은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의 범위를 보고함. 다음 중 관련된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함: 구성기업, 소수지분 구성기업(어떤 소수지분 하위그룹인지 명시), 독립 구성기업, 투자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어떤 JV그룹인지 명시), 무국적 구성기업.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함

3.3.1. 관할국별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Note 3.3.1.a: 신고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포함되는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또는 JV그룹 구성원)에 대해 산정되는 재무회계 순이익·손실 합산액을 기재함

Note 3.3.1.b: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의 순 GloBE 이익·손실을 기재함

Note 3.3.1.c: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또는 JV그룹 구성원)의 회계계정에 계상되는 소득세비용 합산액을 기재함

Note 3.3.1.d: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또는 JV그룹 구성원)의 조정된 대상조세 합산액을 기재함

Note 3.3.1.e: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의 실효세율을 기재함

Note 3.3.1.f: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의 추가세율을 기재함

Note 3.3.1.g: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의 실질기반 소득제외를 기재함

Note 3.3.1.h: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의 초과이익을 기재함

Note 3.3.1.i: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의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을 기재함

Note 3.3.1.j: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QDMTT를 기재함

Note 3.3.1.k: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별 추가세액을 기재함

3.3.1.1. GloBE 이익(손실) 산정

이 부분의 기능 - GloBE 이익(손실) 산정

아래 표에는,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이루어진 모든 조정사항을 합산 기준으로 보고하도록 함. 회계상 순이익·손실은 GloBE 이익·손실 산정의 시작점임. 신고 구성기업은 수행된 조정사항의 관련 금액을 아래 표에 기재하여, 관할국 수준에서, 합산 기준으로,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대해 이루어진 각 유형의 조정사항의 순 금액을 식별하여 기재함

Note 3.3.1.1.1: 신고 구성기업은 주된 기업 및 고정사업장 간 GloBE 이익·손실 배분(제3.4절)과 도관기업으로부터의 GloBE 이익·손실 배분(제3.5절) 이후의 관할국 소재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합산 회계상 순이익·손실을 기재함. 또한 제3.5절은 제7.5절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조세투명기업으로 간주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 투자기업으로부터의 GloBE 이익·손실 배분을 다룸

Note 3.3.1.1.2: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의 순 GloBE 이익(손실)을 기재함

3.3.1.2. 조정된 대상조세 산정

이 부분의 기능 - 조정된 대상조세 산정

아래 표는 관할국의 순 GloBE 이익·손실 산정과 유사한 접근방식을 따름.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계상된 대상조세와 관련하여 당기법인세비용에 이루어진 모든 조정사항을 합산 기준으로 보고해야 함. 신고 구성기업은 수행된 조정사항의 관련 금액을 아래 표에 관할국 수준에서, 합산 기준으로, 당기법인세비용에 대해 이루어진 각 유형의 조정사항의 순 금액을 식별하여 기재함

Note 3.3.1.2.1: 신고 구성기업은 하나의 구성기업에서 다른 구성기업으로 대상조세의 배분(제4.3절) 이후 합산 당기법인세비용(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계상된 대상조세와 관련된)을 기재함. 또한 제4.3절은 제7.5절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조세투명기업으로 간주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 투자기업으로부터의 대상조세 배분을 다룸. 실효세율 조정과 관련된 조항에 따라, 이 표에 기재된 신고 후 조정사항은 보고 회계연도가 아닌 회계연도에 대해 이루어진 조정사항을 포함하지 않음. 제4.6.1조와 관련된 신고 후 조정사항은 전기 회계연도의 대상조세의 증대한 감소로 이어지는 조정사항과 제4.6.1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증대하지 않은 감소로 이어지는 조정사항임

Note 3.3.1.2.2: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조정된 대상조세를 기재함

3.3.1.3. 실질기반 소득제의 산정(적용 가능한 경우)

(a) 실질기반 소득제의 총액

Note 3.3.1.3.a: 신고 구성기업이 관할국에 대해 이 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3.3.1.c의 실질기반 소득제의 미적용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됨

Note 3.3.1.3.a.1: 관할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적격 종업원의 관련된 적격 인건비에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 (i) 자본화되어 적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된 비용; 또는 (ii)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업이익 및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에 귀속되는 비용

Note 3.3.1.3.a.2: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에 대해 적절한 이익가산을 적용을 기재함

Note 3.3.1.3.a.3: 관할국에 소재한 관련 적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함: (i) 판매, 리스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토지 또는 건물 포함)의 장부가액; 및 (ii)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업이익 및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Note 3.3.1.3.a.3: 어떠한 기업이 기업의 직간접 소유지분의 이전으로 인해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더 이상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대상기업의 적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출은 제6.2.1조 (e)항에 따라 관련 회계연도 기간 중 대상기업이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원이었던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함

Note 3.3.1.3.a.4: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에 대해 적절한 이익가산을 적용을 기재함

Note 3.3.1.3.a.5: 신고 구성기업은 관할국에 대해 실질기반 소득제외를 기재함

(b) 실질기반 소득제외 목적상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고정사업장으로의 배분

Note 3.3.1.3.b.1: 신고 구성기업은 제5.3.6조에 따른 조정 이전에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주된 기업의 합산 관련된 적격 인건비를 기재함(즉, 고정사업장으로의 배분)

Note 3.3.1.3.b.2: 신고 구성기업은 제5.3.6조에 따른 조정 이전에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주된 기업의 관련된 적격 유형자산의 합산 장부가액을 기재함

Note 3.3.1.3.b.3: 신고 구성기업은 GloBE 목적상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관할국을 (ISO 3166-1 Alpha 2 기준에 기반하여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 형태로) 기재함.

신고 구성기업은 제5.3.6조에 따라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유형자산 장부가액을 배분받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각 관할국에 대해 관할국마다 별도의 행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신고 구성기업은 고정사업장이 GloBE 목적상 무국적인 경우 “무국적”을 기재함

Note 3.3.1.3.b.4: 신고 구성기업은 제5.3.6조에 따라 3.3.1.3.b.3에 기재된 각 관할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합산 관련 적격 인건비를 기재함. 제3.5.3조 또는 제7.1.4조에 따라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된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적격 인건비는 해당 비율만큼 실질기반 소득제외 산정에서 제외됨

Note 3.3.1.3.b.5: 신고 구성기업은 제5.3.6조에 따라 3.3.1.3.b.3에 기재된 각 관할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관련 적격 유형자산의 합산 장부가액을 기재함. 제3.5.3조 또는 제7.1.4조에 따라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된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의 적격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비율만큼 실질기반 소득제외 산정에서 제외됨

Note 3.3.1.3.b.4 및 3.3.1.3.b.5: 고정사업장의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유형자산은 주된 기업의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유형자산에 고려되지 않음(즉, 주된 기업의 적격 인건비와 적격 유형자산은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유형자산에 대해 각각 감소됨)

(c) 실질기반 소득제외 목적상 도관기업의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배분

Note 3.3.1.3.c.1: 신고 구성기업은 제5.3.6조에 따른 조정 이후 및 제5.3.7조에 따른 조정 이전에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도관기업의 관련된 적격 인건비 합산액을 기재함

Note 3.3.1.3.c.2: 신고 구성기업은 제5.3.6조에 따른 조정 이후 및 제5.3.7조에 따른 조정 이전에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도관기업의 관련된 적격 유형자산 장부가액 합산액을 기재함

Note 3.3.1.3.c.3: 제5.3.7조 (a)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GloBE 목적상 구성기업 소유자(또는 JV그룹 구성원)가 소재한 관할국에 대해 ISO 3166-1 Alpha 2 기준에 따른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를 기재함. 신고 구성기업은 각 무국적 구성기업 소유자에 대해 “무국적”을 기재함. 신고 구성기업은 제5.3.7조 (a)항에 따라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유형자산을 배분받은 구성기업 소유자들(또는 JV그룹 구성원)이 소재한 각 관할국에 대해 관할국마다 별도의 행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제5.3.7조의 (b)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제7.1.1조 적용 이후 최종모기업에 배분되는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유형자산에 대해) 별도의 행에 “최종모기업”을 기재함. 신고 구성기업은 제 5.3.7조 (c)항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의 실질기반 소득제외 산정에서 제외되는 모든 다른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로 기재함

Note 3.3.1.3.c.4: 제5.3.7조 (a)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3.3.1.3.c.3에 기재된 각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소유자(또는 JV그룹 구성원)에 배분된 관련 적격 인건비 합산액을 기재함. 제5.3.7조 (b)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제7.1.1 조의 적용 이후 최종모기업에 배분된 적격 인건비를 기재함. 신고 구성기업은 제5.3.7 조 (c)항에 따라 실질기반 소득제외에서 제외되는 적격 인건비를 기재함. (아래 참조)

Note 3.3.1.3.c.5: 제5.3.7조 (a)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3.3.1.3.c.3에 기재된 각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소유자(또는 JV그룹 구성원)에 배분된 관련 적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합산액을 기재함. 제5.3.7조 (b)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제7.1.1조의 적용 이후 최종모기업에 배분된 관련 적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재함. 신고 구성기업은 제5.3.7조 (c)항에 따라 실질기반 소득제외에서 제외되는 관련 적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재함. (아래 참조)

Note 3.3.1.3.c.4 및 3.3.1.3.c.5: 제5.3.7조 (c)항에 따라 적격 인건비와 적격 유형자산은 다음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실질기반 소득제외에서 제외됨: (i) 역혼성기업에 배분된 회계상 순이익·손실; (ii) 제3.5.3조에 따라 GloBE 순이익·손실에서 제외된 회계상 순이익·손실(즉, 비그룹 구성원에게 배분된); (iii) 제7.1.1조에 따라 GloBE 순이익·

손실에서 제외된 회계상 순이익·손실(즉, 최종모기업 도관기업); (iv) 적격 종업원 및 적격 유형자산이 구성기업 소유자의 관할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구성기업 소유자(또는 JV그룹 구성원)에게 배분된 회계상 순이익·손실

3.3.1.4. 관할국의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있는 경우)

이 부분의 기능 -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

이 부분은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 목적상 두 가지 표를 제공함

표 (a)는 보고 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으로 이어지는 제 4.1.5조 이외의 GloBE 규칙의 관련 조항을 식별하며,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이 기반하여 산출된 전기 회계연도에 보고되고 재계산된 것과 같은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에 대한 요약을 제공함

표 (b)는 보고 회계연도에 관할국에 순 GloBE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4.1.5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a) 제4.1.5조 이외의 목적의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

Note 3.3.1.4.a.1: 신고 구성기업은 제5.4.1조에 따라 전기 회계연도에 대해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을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실효세율 조정 조항을 선택함. 다음 중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기재함: 제3.2.6조, 제4.4.4조, 제4.6.1조, 제4.6.4조, 제7.3.5조, 제7.3.7조

Note 3.3.1.4.a.1: 제4.4.4조는 관련 회계연도가 이전 다섯 번째 회계연도이며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이 3.3.2.2.에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만 선택됨. 제 7.3.5조는 관련 회계연도가 이전 네 번째 회계연도이며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이 아래

3.3.3.2에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만 선택됨

Note 3.3.1.4.a.2: 신고 구성기업은 3.3.1.4.a.1에 보고된 실효세율 조정 조항이 적용되는 전기 회계연도를 기재함

Note 3.3.1.4.a.4-9.a: 이전에 보고된 금액은 전기 회계연도에 관련된 실효세율 조정 조항들(있는 경우)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정사항을 고려함

Note 3.3.1.4.a.4-9.b: 재계산된 금액은 전기 회계연도 및 보고 회계연도에 적용된 관련 실효세율 조정 조항들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정 조항들을 고려함

Note 3.3.1.4.a.10: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은 이전에 보고된 추가세액과 재계산된 추가세액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임

(b) 제4.1.5조의 목적상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

Note 3.3.1.4.b: 이 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해당 관할국 내의 순 GloBE 이익이 양(positive)의 금액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Note 3.3.1.4.b.1: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 조정 대상조세의 음(negative)의 금액을 보고함

Note 3.3.1.4.b.2: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의 GloBE 손실을 보고함

Note 3.3.1.4.b.3: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의 예상되는 조정 대상조세를 보고함

Note 3.3.1.4.b.4: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의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을 보고함

3.3.1.5. 적격 내국 최저추가세(QDMTT)

Note 3.3.1.5.1: 신고 구성기업은 QDMTT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기초하여 내국 초과이익을 산정한 경우에 이 란을 작성함. 신고 구성기업은 QDMTT하의 내국 초과이익의 산정에 사용된 것으로, 중요한 경쟁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되고, 관할국의 공인회계기구가 허용한 '인정된 재무회계기준' 또는 '공인 재무회계기준'을 보고함

Note 3.3.1.5.2: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의 해당 관할국의 QDMTT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보고함

3.3.2. 이연법인세회계와 관련된 관할국별 산정

3.3.2.1. 이연법인세조정

(a) 요약

Note 3.3.2.1.a.1: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 내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의 회계계정의 이연법인세비용 금액의 총액을 보고함

Note 3.3.2.1.a.2: 신고 구성기업은 3.3.2.1.a.3 및 3.3.2.1.a.4에 보고된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의 합산액을 보고함

Note 3.3.2.1.a.3: 신고 구성기업은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재계산하여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 GloBE 손실에 기인함을 입증해야 함(제4.4.3조)

Note 3.3.2.1.a.4: 신고 구성기업은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 금액을 보고함

Note 3.3.2.1.a.5: 총 조정 금액은 3.3.2.1.b.2의 총 조정 금액이어야 함. 3.3.2.1.b의 조정은 재계산 후의 이연법인세비용에 영향을 미쳐야 함

Note 3.3.2.1.a.6: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의 총 이연법인세 조정 금액을 보고함

(b) 상세 조정 내역

Note 3.3.2.1.b: 신고 구성기업은 이 표의 내역에 따른 조정을 보고함

(c) 손실 소급

이 부분의 기능 - 손실 소급

이 부분은 국내 세무상 손실이 과거 회계연도로 소급되고 조세 환급을 발생시킬 때 적용됨. 제4.6.1조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환급액이 유의미하지 않고 신고 구성기업이 그러한 금액을 당기 회계연도에 고려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신고 구성기업은 확정되어야 하는 간주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을, 손실이 소급된 각 이전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대상조세의 환급액과 함께 보고해야 함

Note 3.3.2.1.c.1.a,b 등: 신고 구성기업은 국내 세무상 손실이 소급되어, 이전 회계연도에 소멸 처리되어야 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을 보고함

Note 3.3.2.1.c.2.a,b 등: 신고 구성기업은 이전 회계연도로 소급된 국내 세무상 손실과 관련된 대상조세 환급액을 보고함. 환급액은 이전 회계연도로 소급된 국내 세무상 손실과 일치해야 함

Note 3.3.2.1.c.1.c: 신고 구성기업은 이전 회계연도에 소멸 처리되어야 하는 간주 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을 보고해야 함. 이 총액은 제4.6.1조의 주석서(Commentary)

124-125 문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내 세무상 손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한됨

Note 3.3.2.1.c.2.c: 신고 구성기업은 대상조세 환급액 총액을 보고함. 이 총액은 보고 회계연도에 보고된 손실 소급과 관련된 조세 환급액이어야 함

Note 3.3.2.1.c.1.c 및 Note 3.3.2.1.c.2.c: 3.3.2.1.c.1.c와 3.3.2.1.c.2.c 사이의 차이는 손실 소급과 관련하여 보고 회계연도의 대상조세에 대한 조정이 될 것임. 이 금액은 3.3.1.2.1.j에서 보고된 보고 회계연도의 제4.6.1조에 따른 조정에 고려되어야 함

3.3.2.2. 재계산 메커니즘

이 부분의 기능 - 재계산 메커니즘

다음 표의 목적은 제4.4.4조에 따라 재계산되어야 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것임

이 표는 보고 회계연도 및 선행하는 5개 회계연도에 기록된, 재계산 예외 발생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나타냄. 신고 구성기업은 재계산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후속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보고함

Note 3.3.2.2.2: 이 란에 보고된 이연법인세부채는 관련 회계연도에 제4.4절에 고려되는 금액이고, 재계산 예외 발생 계정을 포함하지 않음

Note 3.3.2.2.3: 재계산 예외 발생 계정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주석서 및 향후 발간될 합의된 행정지침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4.4.4조의 방법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재계산 되어야 함. 해당 표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금액을 합산함

Note 3.3.2.2.4: 이전 다섯 번째 회계연도에 기록된 이연법인세부채가 보고 회계연도 말일에 소멸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은 재계산함. 금액이 재계산되는 경우, 재계산 이연법인세부채는 이전 다섯 번째 회계연도의 대상조세의 감소로 처리함. 해당 회계연도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은 제5.4.1조에 따라 재산정함.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과 관련된 보고 의무는 3.3.1.4에 나타나 있음

3.3.2.3 경과규정

이 부분의 기능 - 경과규정

다음 표는 경과연도가 개시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이전에 존재하던 이연법인세 회계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임

- 표 (a)는 경과연도 및 후속연도에 관할국의 실효세율 계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정보를 요구함
- 표 (b)는 2021년 11월 30일 이후부터 경과연도 사이에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 사이에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처분 기업의 GloBE 목적상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과 그에 기반하여 GloBE에 반영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정보를 요구함

(a) 제9.1.1조 및 제9.1.2조의 적용

Note 3.3.2.3.a.1: 경과연도가 개시될 때의 이연법인세부채는, 관할국 내 경과연도가 개시될 때 회계 계정에 기록된 이연법인세부채의 총액으로, 2021년 11월 30일 이후부터 경과연도의 개시 사이에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 사이에서 이전된 자산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포함하지 않음. 이러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제9.1.3조의 적용과 관련된 표에 반영되어야 함

Note 3.3.2.3.a.2: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는 것은 적용 내국 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Note 3.3.2.3.a.3: 경과연도가 개시될 때의 이연법인세자산은, 관할국 내 경과연도가 개시될 때 회계 계정에 기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으로, 2021년 11월 30일 이후부터 경과연도의 개시 사이에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 사이에서 이전된 자산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하지 않음.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제9.1.3조의 적용과 관련된 표에 반영되어야 함

Note 3.3.2.3.a.4: 이연법인세자산이 GloBE 손실에서 기인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적용 내국 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고, 입증되는 경우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될 수 있음

Note 3.3.2.3.a.5: 제3장에 따른 GloBE 이익·손실의 산정에서 제외된 항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이 2021년 11월 30일 이후에 이뤄진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함

Note 3.3.2.3.a.6: GloBE 목적상 반영된 이연법인세자산은 경과연도가 개시될 때 GloBE 규정의 목적상 인식되어야 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임

(b) 제9.1.3조의 적용

Note 3.3.2.3.b.1: 신고 구성기업은 2021년 11월 30일 이후부터 경과연도 개시 사이에 해당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에 자산을 처분한 처분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이 소재하는 모든 관할국의 목록을 제공해야 함. 처분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이 소재하는 관할국들은 취득 기업들의 관할국과 동일할 수 있음. 신고 구성기업은 처분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관할국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ISO 3166-1 Alpha 2 기준에 기초한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의 형식). 신

고 구성기업은 무국적 구성기업의 “무국적”을 보고함

Note 3.3.2.3.b.2: GloBE 목적상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경과연도가 개시될 때 GloBE 규칙 목적상 인식되어야 하는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의 총액임. 이 금액은 처분 기업의 처분에 따른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에 기반하여 산정되어야 함

Note 3.3.2.3.b.3: GloBE 목적으로 이전된 자산과 관련된 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는, 그 이전된 자산과 관련하여 경과연도가 개시될 때 GloBE 규칙 목적상 인식되어야 하는, 이전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순 총액임. 이 금액은 이전된 자산과 관련하여 이전되기 전에 처분 기업의 회계 계정에 인식되었던, 이미 존재하던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순 총액에 기반하여 산정되어야 함

3.3.3. 관할국별 선택(해당하는 경우)

이 부분의 기능 - 관할국별 선택(해당하는 경우)

제8.1.4조 (d)항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GloBE 규정의 관련 조문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의 기록을 포함하도록 함. 아래의 표는 다음 항목 사이의 구별을 나타냄: (i) 관할국별 선택(즉, 관할국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에 적용되는 선택); 그리고 (ii) 구성기업 선택(즉, 단일의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에 적용되는 선택). 나아가 이 표는 다음을 나타냄: (i) 연간 선택, 및 (ii) 5개년 선택. 5개년 선택을 위하여, 신고 구성기업은 또한 철회연도 즉, 선택이 철회되는 연도(해당하는 경우)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GloBE 손실 선택은 구별되어 나타나야 하며, 신고 구성기업은 선택연도와 철회연도(1회만 가능)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3.3.3.1. 관할국별 선택(제7.3.1조 제외)

Note 3.3.3.1: 관할국별 선택은 해당 관할국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에 적용되는 선택임

Note 3.3.3.1.c: 신고 구성기업이 해당 관할국과 관련하여 3.3.1.3을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관할국에서 ‘실질기반 소득제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3.3.3.1.c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됨

Note 3.3.3.1.g: 신고 구성기업은 선택이 이루어진 관할국이 포함된 첫 번째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서만 GloBE 손실 선택을 할 수 있음. 추후 선택이 철회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동일한 관할국에 대하여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음

Note 3.3.3.1.3: 5개년 선택을 위하여 신고 구성기업은 선택연도를 보고함

Note 3.3.3.1.4: 5개년 선택을 위하여 신고 구성기업은 선택이 철회된 연도를 보고함 (해당하는 경우)

3.3.3.2. 제7.3.1조 선택

(a) 제7.3절의 재계산 메커니즘

이 부분의 기능 - 재계산 메커니즘

아래의 표는 제7.3.1조가 적용되는 선택의, 각 이전 회계연도에 설정된 ‘간주 분배세 재계산 계정’의 미처리 잔액을 나타냄. 그 계정이 설정된 회계연도 후 4번째 회계연도의 말일에 ‘간주 분배세 재계산 계정’의 미처리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 5.4.1조에 따라 재계산되어야 함. 편출되는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이 다국적기업 그룹(또는 JV그룹)에서 편출되거나 모든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전하는 경우, 각 선행하는 연도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은 제5.4.1조의 원칙에 따라 재계산됨

Note 3.3.3.2.a.2: 신고 구성기업은 설정된 회계연도에 제7.3.2조에 따라 산정된 간주 분배세의 금액을 보고함

Note 3.3.3.2.a.3: 각 후속연도 말에, 제7.3.3조에서 규정하듯이 간주 분배세 재계산 계정의 미처리 잔액은,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이 납부한 세액, 해당 관할국의 순 GloBE 손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당기 회계연도에 적용된 '재계산 계정 이월 손실'에 의하여, 그 발생 순서에 따라 영(0) 이하는 아닌 금액으로 감소함

Note 3.3.3.2.a.4: 계정이 설정(이 표의 첫 번째 줄)된 회계연도 이후 네 번째 회계연도의 말일에 미처리 잔액이 있는 경우, 제7.3.5조가 적용됨. 편출되는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이 다국적기업 그룹에서 편출되거나 모든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전하는 회계연도에, 제7.3.7조가 적용됨. 그 금액은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그 결과는 제3.3.1.4.a에서 보고함

(b) 제7.3.7조의 적용

Note 3.3.3.2.b.1: 신고 구성기업은 간주 분배세 재계산 계정이 미지급되어 제5.4.1조의 원칙에 따라 재계산된 모든 과거 회계연도를 보고함

Note 3.3.3.2.b.2: 증분 추가세액은 제7.3.7조가 적용되는 경우, 제5.4.1조에 따라 산정된 추가세액의 총액임

Note 3.3.3.2.b.3: '처분 재계산 비율'은 제7.3.8.조에 정의되어 있고, 각 편출 구성기업(JV그룹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산식을 사용하여 결정됨: 구성기업(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해당 관할국의 순 이익

3.4. 구성기업별 산정

이 부분의 기능 - 구성기업별 산정

이 부분은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을 위한 기업 수준의 정보를 담고 있음. 3.4.1은 각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에 대한 모든 조정의 상세 사항, 역외 조정, 최종모기업이 도관 기업이거나 배당 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이루어진 조정을 제공함. 3.4.2는 관할국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당기법인세비용에 이루어진 조정에 대한 정보 및 한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에서 다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상호 배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3.4.3은 단일의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에 적용되는 선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3.4.4는 제3.3절하에서도 GloBE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익(즉, 국제 해운업 이익)의 상세한 내용을 담음. 마지막으로 3.4.5는 특정한 경우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3.4.1. GloBE 이익 또는 손실

(a)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 조정

Note 3.4.1.a.1: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의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된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TIN 또는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3.4.1.a.2: 신고 구성기업은 주된 기업과 고정사업장 사이의 GloBE 손익 배분(제3.4절) 및 도관기업으로부터의 GloBE 손익 배분(제3.5절) 후의,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의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FANIL)을 보고함. 제3.5절은 또한 제7.5절에 따른 선택 결과 조세 투명 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 투자기업으로부터의 GloBE 손익 배분을 다룸

Note 3.4.1.a.3: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손실)을 보고함

(b) 주된 기업과 고정사업장 사이 및 도관기업으로부터의 손익 배분(제3.4절 및 제3.5절)

Note 3.4.1.b: 해당 관할국 내의 자신의 회계 계정(분리 계정)에 의하여,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FANIL)이 이미 그 관할국의 고정사업장에 기인하는 손익을 반영한 경우, 제3.4절에 따른 어떤 조정도 요구되지 않음. 제3.5절에 따른 조정은 제7.5절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과 관련하여,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도관기업에도 적용됨

Note 3.4.1.b.1: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된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TIN 또는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3.4.1.b.2: 관련 조정 이전의,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은 이 란에서 보고함. 다수의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3.4.1.조 (b)2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은 과거 조정에 고려된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을 반영해야 함

Note 3.4.1.b.3: 신고 구성기업은 다음 목록으로부터 관련 조정을 보고함: 제3.4절, 제3.5.3조, 제3.5.1조 (a)항 및/또는 제3.5.1조 (b)항. 각 유형의 조정을 위하여,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에 대한 개별적인 증가 또는 감소를 보고함. 다수의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한 행은 각 선택을 보고하고, 관련 선택은 다음 순서에 따라 보고함: 제3.4절, 제3.5.3조, 제3.5.1조 (a)항 및/또는 제3.5.1조 (b)항

- 제3.4절에 따른 조정은 GloBE 손익을 해당 관할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무국적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정(증가) 및 해당 관할국에 소재하는 주된 기업으로부터 GloBE 손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정(감소)을 포

함함. 제3.4절과 관련된 조정은 도관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의 GloBE 손익의 배분을 포함하지 않음

- 제3.5.3조에 따른 조정은 그룹 기업이 아닌 다른 소유주에게 배분된 GloBE 손익 금액에 대한 감소를 포함함
- 제3.5.1조 (a)항에 따른 조정은 도관기업으로부터의 GloBE 손익을 해당 관할국 내의 고정사업장 또는 무국적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정(증가) 및 무국적 도관기업(또는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관할국에 소재하는 도관기업)으로부터 다른 관할국의 고정사업장으로의 배분(감소)을 포함함
- 제3.5.1조 (b)항에 따른 조정은 최종모기업이 아닌 조세투명기업으로부터 GloBE 손익을 해당 관할국의 구성기업 소유주로 배분(추가) 및 최종모기업이 아닌 조세투명기업으로부터 다른 관할국의 구성기업 소유주로의 배분(감소)을 포함함

Note 3.4.1.b.3: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된 다른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TIN 또는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3.4.1.b.5: 신고 구성기업은 다른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관할국(ISO 3166-1 Alpha 2 기준에 기초한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의 형식)을 보고함. 신고 구성기업은 무국적 구성기업의 “무국적”을 보고함

Note 3.4.1.b.6: 3.4.1.b.1에서 나타나는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을 증가시키는 모든 조정 금액은 이 란에서 보고함

Note 3.4.1.b.7: 3.4.1.b.1에서 나타나는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을 감소시키는 모든 조정 금액은 이 란에서 보고함

Note 3.4.1.b.8: 관련 조정 이후의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FANIL)은 이 란에서 보고함. 다수의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3.4.1조 (b)2항

에서 보고하는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은 동일한 행에 나타난 조정을 고려한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FANIL)을 반영함

(c) 국외 조정

Note 3.4.1.c: 신고 구성기업은 제3.2.3조에 따른 국외 조정이 보고 회계연도 동안 총액이 3천 5백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그룹 내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음

Note 3.4.1.c.1: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에 소재하는 조정이 적용되는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또는 관련된 경우 무국적 구성기업)의 TIN을 보고함.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3.4.1.c.2: 신고 구성기업은 제3.2.3조 또는 제3.2.7조에 조정이 관련되는지 여부를 보고함

Note 3.4.1.c.3: 신고 구성기업은 식별된 그 조정에 연관된 다른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TIN을 보고함.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3.4.1.c.4: 신고 구성기업은 그 조정에 연관된 다른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관할국을 보고함(ISO 3166-1 Alpha 2 기준에 기초한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의 형식). 신고 구성기업은 무국적 구성기업의 “무국적”을 보고함

Note 3.4.1.c.5: 3.4.1.c.1에 나타난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을 증가시키는 모든 조정 금액은 이 란에 따라 보고함

Note 3.4.1.c.6: 3.4.1.c.1에 보고된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을 감소시키는 모든 조정 금액은 이 란에 따라 보고함. 비용을 제외하는 제3.2.7조에 따른 조정은 GloBE 이익에 가산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임. 따라서 6번 란은 그러한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음

(d) 제7.1절 또는 제7.2절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GloBE 이익 조정

Note 3.4.1.d: 신고 구성기업은 제7.1절과 제7.2절이 적용되는 경우 이 표를 작성함

Note 3.4.1.d.1: 제7.1절 또는 제7.2절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관할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기업임. 그러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보고함. 제7.1.4조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제7.1절이 적용되는 고정 사업장의 TIN 또는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제7.2.3조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제7.2절이 적용되는 구성기업의 TIN 또는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3.4.1.d.2: 신고 구성기업은 적용되는 각 조(즉, 제7.1.1조, 제7.1.2조, 제7.2.1조 또는 제7.2.2조)를 관련 하위 항의 글자 및 숫자와 함께 보고함

Note 3.4.1.d.3: 신고 구성기업은 제7.1.1조 (a)항 또는 제7.1.1조 (c)항(각각, 제7.2.1조 (a)항 또는 제7.2.1조 (c)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각 소유지분의 보유자(각 배당 수익자)에 대한 별개의 행을 작성함. 신고 구성기업은 전체 자연인을 보고함. 신고 구성기업은 다음과 같이 GloBE 이익의 감소가 적용되기 위한 소유지분 보유자(각 배당 수익자)를 보고함:

(a) 제7.1.1조 (a)항(각 제7.2.1조 (a)항)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각 소유지분 보유자(각 배당 수익자)는 (i) TIN (ii) 보유자가 세무상 거주자인 관할국 (iii) 최종모기업의 조정 대상조세의 총액 및 제외 이익의 소유지분 보유자에 대한 조세(각 배당 이익에

대하여 배당 수익자가 납부한 조세)와 제외 이익의 금액을 비교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명목세율 또는 기대되는 총 세율(비율)의 보고를 통해 식별됨. 제7.2.1조 (a)항 (iii)과 관련하여 배당 수익자가 자연인인 경우, 대신 자연인이 세무상 거주자인 관할국이 각 관할국에서 세무상 거주자인 자연인의 수와 함께 보고됨

(b) 제7.1.1조 (b)항(각 제7.2.1조 (b)항)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자연인을 식별하는 대신 자연인의 총 수를 보고함

(c) 제7.1.1조 (c)항(각 제7.2.1조 (c)항)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각 소유지분 보유자(각 배당 수익자)는 (i) TIN(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 (ii) 기업의 유형(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또는 제7.2.1조 (c)항의 목적상 연금 서비스 기업이 아닌 연금펀드)의 보고를 통하여 식별됨

Note 3.4.1.d.4: 신고 구성기업은 3.4.1.d.3에 나타난 최종모기업의 각 보유자가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을 보고함(비율)

Note 3.4.1.d.5: 3.4.1.d.1에 나타난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을 감소시키는 모든 조정 금액은 이 란에서 보고함. 제7.1절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3.4.1.d.4의 각 소유지분에 기인하는 GloBE 이익(손실)을 보고함. 제7.2절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3.4.1.d.3의 각 주주(즉, 배당 수익자)에게 분배된 배당공제의 금액을 보고함

3.4.2. 조정된 대상조세

(a) 회계계정의 당기법인세비용 조정

Note 3.4.2.a.1: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된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TIN 또는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3.4.2.a.2: 신고 구성기업은 한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으로부터 다른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으로서의 배분 이후, 당기법인세비용(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에 인식된 대상조세 관련)을 보고함(제4.3절). 제4.3절은 또한 제7.5절에 따른 선택 결과 조세 투명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 투자기업으로부터의 대상 조세의 배분을 다룸. 이 표에 나타나는 신고 후 조정은 실효 세율 조정 조항에 따라 보고 회계연도가 아닌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조정은 포함하지 않음. 제4.6.1조와 관련된 신고 후 조정은 이전 회계연도의 대상조세의 상당한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제4.6.1조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선택의 경우에는 미세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임

Note 3.4.2.a.2.p: 총 이연법인세 조정 금액은 고정사업장의 GloBE 손실이 제3.4.5조에 따라 주된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기 위한 손실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의 관할국내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Note 3.4.2.a.3: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조정 대상조세를 보고함

(b) 조세의 상호 배분

Note 3.4.2.b.1: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TIN 또는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3.4.2.b.2: 신고 구성기업은 조정 전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대상조세를 보고함

Note 3.4.2.b.3: 신고 구성기업은 제4.3.2조 또는 제4.3.4조가 적용되는 관련 하위 항목을 보고함

Note 3.4.2.b.4: 신고 구성기업은 다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TIN 또는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3.4.2.b.5: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으로부터 다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으로의 배분을 위하여, 신고 구성기업은 다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관할국을 보고해야 함(ISO 3166-1 Alpha 2 기준에 기초한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의 형식). 다른 구성기업이 무국적 구성기업인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무국적”을 보고함

Note 3.4.2.b.6: 신고 구성기업은 3.4.2.b.1에서 보고된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대상조세 증가를 보고함

Note 3.4.2.b.7: 신고 구성기업은 3.4.2.b.1에서 보고된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대상조세 감소를 보고함

(c) 이연법인세비용

Note 3.4.2.c.1: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TIN 또는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3.4.2.c.2: 신고 구성기업은 조정 전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이연법인세비용을 보고함

Note 3.4.2.c.3: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이연법인세비용의 각 조정 금액을 보고함

Note 3.4.2.c.4: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이연법인세 조정 총액을 보고함

3.4.3. 구성기업 선택(또는 JV그룹에 적용되는 선택)

Note 3.4.3.4: 5개년 선택을 위해, 신고 구성기업은 선택 연도를 보고함

Note 3.4.3.5: 5개년 선택을 위해, 신고 구성기업은 선택이 철회된 연도를 보고함(해당하는 경우)

Note 3.4.3.3.d: 제7.6절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정보가 수집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Note 3.4.3.e.1: 신고 구성기업은 제6.3.4조의 적용에 따른 선택을 위해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을 보고함

Note 3.4.3.e.2: 신고 구성기업은 조세 조정을 유발하는 사건(즉, 유발사건)의 회계 연도를 보고함

Note 3.4.3.e.3: 신고 구성기업은 (i) 제6.3.4조 (a)항에 따라 산정된 순 합산액이 유발 사건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GloBE 손익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보고함. 신고 구성기업은 (ii) 순 합산액을 5로 나눈 금액과 동일한 액수가 유발 사건이 발생한 회계연도 및 각 4개의 후속 회계연도의 GloBE 손익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고함

3.4.4. 국제해운업이익 제외

이 부분의 기능 - 국제해운업이익 제외

신고 구성기업은 제3.3절(즉, 국제해운업이익 제외)따라 GloBE 규칙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3.4.4(a) 및 (b)는 신고 구성기업이 국제해운업이익 및 적격 부수 국제해운업이익의 산정 및 그 관련된 비용과 대상조세를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보고함

(a) 국제해운업이익 제외

Note 3.4.4.a.1: 신고 구성기업은 국제해운업이익 또는 적격 부수 국제해운업이익 제외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TIN(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3.4.4.a.2: 신고 구성기업은 국제해운업이익 획득과 관련하여(몇몇 선택이 적용될 수 있음) 제3.3.2조 (a)항부터 (f)항까지 특정된 모든 관련 활동을 보고함

Note 3.4.4.a.3-5: 신고 구성기업은 제3.3.2조 (a)항부터 (f)항까지 특정된 모든 관련 활동에 귀속되는 수익과 원가 총액 및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업이익 획득 총액을 보고함

Note 3.4.4.a.6: 신고 구성기업은 적격 부수 국제해운업이익 획득과 관련하여(몇몇 선택이 적용될 수 있음) 제3.3.2조 (a)항부터 (f)항까지 특정된 모든 관련 활동을 보고함

Note 3.4.4.a.7-9: 신고 구성기업은 제3.3.3조의 (a)항부터 (e)항까지 특정된 각 관련 활동에 귀속되는 수익과 원가 총액 및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적격 부수 국제해운업이익의 총액을 보고함

Note 3.4.4.a.10: 신고 구성기업은 국제해운업이익 또는 적격 부수 국제해운업이익에 귀속되는 인건비를 보고함

Note 3.4.4.a.11: 신고 구성기업은 국제해운업이익 또는 적격 부수 국제해운업이익(적격 부수 국제해운업이익의 한도를 넘는 초과 이익에 귀속되는 것을 제외)의 창출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보고함

Note 3.4.4.a.12: 신고 구성기업은 제외된 국제해운업이익 또는 적격 부수 국제해운업이익과 연관된 대상조세를 보고함

(b)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의 관할국별 상한

Note 3.4.4.b.1: 신고 구성기업은 3.3에서 보고되고, 해당 관할국에 소재하는 관련 하부 그룹의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에 대한 국제해운업이익의 총액을 보고함

Note 3.4.4.b.2: 신고 구성기업은 50% 한도 금액을 보고함

Note 3.4.4.b.3: 신고 구성기업은 3.3에서 보고되고, 해당 관할국에 소재하는 관련 하부 그룹의 모든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을 위한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의 총액을 보고함

Note 3.4.4.b.4: 신고 구성기업은 3.3에 보고된 관련 하부 그룹의 모든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의 총액이, 3.3에 보고된 관련 하부 그룹의 모든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국제해운업이익 총액의 50%를 초과하고 그 초과 이익이 GloBE 이익에 포함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고함. 직·간접 원가가 제3.3.4조에 따른 50% 한도를 초과하는 적격 보조적 활동으로부터의 이익에 귀속되는 수준까지, 그 원가는 구성기업의 GloBE 이익(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 산정에 고려되는데, 이는 관련 이익 또한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임.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의 한도를 넘는 구성기업의 초과 이익(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초과 이익)에 귀속되는 인건비 및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인건비 제외 및 유형자산 제외 산정에 포함함

3.4.5. 기타 회계 기준

Note 3.4.5.1: 신고 구성기업은 다음을 보고함: (i) 제3.1.3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된 회계기준이 아니라, 인정된 재무회계기준 또는 공인 재무회계기준에 기초하는 관할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ii) 제3.1.3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이 공동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된 회계기준이 아니라, 인정된 재무회계기준 또는 공인 재무회계기준에 기초하는 관할국에 소재하는 JV 종속기업; (iii) 제6.1.4조 (a)항의 결과,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된 회계기준이 아니라, 인정된 재무회계기준 또는 공인 재무회계기준에 기초하는 관할국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Note 3.4.5.2: 신고 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의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 산정에 사용된 인정된 재무회계기준 또는 공인 재무회계기준을 보고함

3.5. 국제활동 초기 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적용 가능한 경우)

이 부분의 기능 - 국제활동 초기 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제활동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 UTPR 목적의 추가세액은 영(0)으로 감소됨. 적용 가능한 경우, 아래 표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제외를 적용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함

Note 3.5: 제9.3절이 적용되고 어떤 그룹 기업도 적격 IIR을 적용할 의무가 없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추가세액이 영(0)으로 감소되는 관련 관할국에 대하여 3.1부터

3.4까지 보고하지 않음. 어떤 그룹 기업도 적격 IIR을 적용할 의무가 없고 UTPR 목적으로 모든 관할국의 추가세액이 영(0)으로 감소되는 경우, GIR의 4장을 보고하지 않음

Note 3.5.1: 제9.3절은 3.5.1에 보고된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5개 연도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음. GloBE 규칙이 발효되는 경우 그 범위 내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하여, 3.5.1에 보고된 일자는 UTPR 규칙이 발효되는 경우 그 일자로 대체함

Note 3.5.2: 준거 관할국은 제9.3.3조에 정의되어 있음

Note 3.5.3: 신고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 그룹이 원래대로라면 GloBE 규칙의 범위 내에 있었을 회계연도에 관할국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 장부가액을 보고함

Note 3.5.4: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또는 제외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소재지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한 관할국의 수 산정에 고려하지 않음

Note 3.5.5.a: 신고 구성기업은 준거 관할국이 아니라, 다국적기업 그룹이 원래대로라면 GloBE 규칙의 범위 내에 있었을 회계연도에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각 관할국의 ISO 3166-1 Alpha 2 기준에 기초한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의 형식을 보고함. 준거 관할국이 아닌 관할국의 수는 5개를 한도로 함

Note 3.5.5.b: 신고 구성기업은 각 관할국에 대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이 원래대로라면 GloBE 규칙의 범위 내에 있었을 회계연도에 준거 관할국이 아닌 각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 장부가액을 보고함. 무국적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은, 다국적기업 그룹이 그 유형자산이 물리적으로 준거 관할국에 위치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준거 관할국이 아닌 관할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됨.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또는 제외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유형자산

은, 준거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 장부가액의 합산액을 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음

Note 3.5.6: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 동안 다국적기업 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한 관할국의 수를 보고함. 보고 회계연도가 다국적기업 그룹이 원래대로라면 GloBE 규칙의 범위 내에 있었을 회계연도인 경우, 그 정보는 3.5.4에서 보고된 정보에서 알 수 있으므로 보고하지 않음

Note 3.5.7: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 동안 준거 관할국이 아닌 다른 모든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 장부가액의 합산액을 보고함. 보고 회계연도가 다국적기업 그룹이 원래대로라면 GloBE 규칙의 범위 내에 있었을 회계연도인 경우, 그 정보는 3.5.5에서 보고된 정보에서 알 수 있으므로, 보고하지 않음

4) 추가세액 배분 및 귀속

이 부분의 기능 - 추가세액 배분 및 귀속

4장은 GloBE 규칙에 따라 납부되어야 하는 추가세액의 산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

이 부분에서는 QIIR이 적용되는 경우 각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납부되어야 하는 추가세액의 금액을 특정하고, 각 모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배분대상 지분이 보고됨. 또한 UTPR 추가세액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산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경우에는 각 UTPR 관할국의 UTPR 비율을 제공함. II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구성기업에 기반한 추가세액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과 같은 간소화 가능성은 아래에서 논의함

4.1. IIR 또는 UTPR 적용과 관련한 저세율 관할국

4.1.1. 저세율 관할국의 정보

Note 4.1.1.1: 신고 구성기업은 저세율 관할국, 즉 제3장의 산정 결과 다국적기업 그룹이 추가세액 책임이 있는 관련 관할국을 보고함(ISO 3166-1 Alpha 2 기준에 기초한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의 형식). 신고 구성기업은 각 무국적 구성기업에 대한 “무국적”을 보고함

Note 4.1.1.2: 하나의 행은 각 구분된 하위그룹에 적용됨. 관련 선택은 다음 목록에서 선정함: 구성기업, 소수지분 구성기업(소수지분 하위그룹 특정), 독립된 소수지분 구성기업, 투자기업 또는 JV그룹(JV그룹 특정)의 구성원, 무국적 구성기업. 만약 하나 이상의 선택이 관련성이 있다면, 신고 구성기업은 모든 관련 선택을 선정함

Note 4.1.1.3: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 내 관련 하위그룹의 3.3.1.k로부터 추가세액을 보고함

4.1.2. 저세율 관할국과 관련한 IIR의 적용

Note 4.1.2: 이 정보는 관련 저율과세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QIIR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Note 4.1.2: 이 정보는 만약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 중간 모기업이 제2.1.2조 또는 제2.1.4조에 따라 QIIR을 적용하고, 모든 관련 저율과세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에 대한 모기업의 배분대상 지분이 100%라면, 개별 기업 단위로 보고될 필요는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4.1.2.3.a에서 보고된 모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배분대상 지분은 4.1.1.3에 보고된 관할국별 추가세액과 동일해야 함

Note 4.1.2.1.a: 추가세액이 배분된 그룹기업은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하인 저세율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소수지분 구성기업, 투자기업, JV그룹의 구성원 또는 무국적 구성기업임

Note 4.1.2.1.b: 제5.4.2조 및/또는 제5.4.3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각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은 관련 추가세액을 배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나, 위 조문에 규정되고 이 주석에서 명확히 하는 대체 배분 요소가 적용되어야 함. 제5.4.2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각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은 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이 제5.4.1조에 따라 재계산을 수행(제5.2.5.조의 규정에 의함)한 회계연도의 GloBE 이익과 동일해야 함. 제5.4.3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각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은 조정된 대상조세 금액(0보다 작으면서 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이익 또는 손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값보다 작은 금액)을 기록한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에 대하여만 보고함. 그리고 그 GloBE 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GloBE 이익 또는 손실×최저한세율) - 조정된 대상조세. 제5.4.2조 및 제5.4.3조가 모두 적용된다면, 이 주석에 제시된 각 대체 요소는 개별적으로 보고함

Note 4.1.2.1.c: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추가세액은,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 관할국별 추가세액의 관련 금액의 지분임. 이 금액은 관할국별 추가세액 금액에,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총 이익에 대한 해당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 비율을 곱하여 산출됨. 제5.4.2조 및/또는 제5.4.3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총 GloBE 이익은 관할국별 GloBE 이익과 마찬가지로 추가세액을 배분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대신 4.1.2.1.b.에 제시된 관련 대체 배분 요소가 사용되어야 함(NOTE 4.1.2.1.b. 참조).¹⁵⁾ 만약 제7.6절이 적용된다면,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추가세액은 제7.6.2조 (c)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어야 함

15) 원문의 오기를 수정하여 기재함

Note 4.1.2.2.a: 신고 구성기업은 모기업의 TIN(또는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4.1.2.2.b: 신고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모기업이 QIIR을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국을 ISO 3166-1 Alpha 2 기준에 기초한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의 형식에 따라 보고함

Note 4.1.2.2.c: 관련 모기업이 아닌 다른 소유자가 보유한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GloBE 이익의 금액은 제2.2.3조에 따라 결정됨

Note 4.1.2.3.b: IIR 상채란 소유 구조의 하위 부분에 위치한 부분소유 중간 모기업 또는 중간 모기업에 의하여 QIIR하에서 부과되는 추가세액 금액임

4.1.3. 저세율 관할국과 관련한 총 UTPR 추가세액 금액

Note 4.1.3.1: 만약 추가세액 산정이 이뤄진 관련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QIIR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표는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에 기초하여 작성될 필요는 없음. 신고 구성기업은 각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TIN 대신에 “모든” TIN 또는 TIN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인의 등록 코드/번호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보고함

Note 4.1.3.2: 제2.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각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의 추가세액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서 모기업의 QIIR하에서 납부 추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JV그룹의 각 구성원의 추가세액은, 해당 JV 구성원의 최종모기업 추가세액에 대한 배분대상 지분에서 모기업의 QIIR하에서 납부 추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추가세액 산정이 이뤄진 어떤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과 관련하여서도 QII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정보는 보고될 필요가 없고, 이 표는 관할국에 기반하여 작성함

Note 4.1.3.3: 신고 구성기업은 해당 관할국과 관련하여 총 UTPR 추가세액 금액을 보고함

Note 4.1.3.3: 신고 구성기업은 저세율 관할국에 소재한 각 저율과세 구성기업 및 JV 그룹의 구성원에 대하여 4.1.3.1에서 보고된 모든 금액(제2.5.1조에서 고려되는 추가세액)의 합산액을 보고함. 4.1.3.1에서 보고된 금액이 있는 각 무국적 구성기업도 마찬가지임. 추가세액 산정이 이뤄진 어떤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그룹의 구성원)과 관련하여서도 QII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5.1조에서 고려된 추가세액은 관할국 별로 산정된 추가세액임

4.2. UTPR하의 추가세액 배분

Note 4.2: 신고 구성기업은 보고 회계연도에 적어도 한 관할국에 UTPR 추가세액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4.2.2에서 보고된 UTPR 추가세액 이월이 있는 경우, 이 표를 작성함

Note 4.2.1: 신고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UTPR 관할국을 ISO 3166-1 Alpha 2 기준에 기초한 알파벳 두 자리 국가 코드의 형식에 따라 보고함

Note 4.2.2: 이전 회계연도에 관할국에 배분된 UTPR 추가세액 금액이 아직 그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동일한 추가적인 현금 조세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 제 2.4.2조에 따라 이월된 금액은 4.2.2에서 보고함

Note 4.2.3 및 4.2.4(총액): 제2.6.3조를 적용한 결과 UTPR 관할국에서 4.2.5의 UTPR 비율이 영(0)인 경우, 그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총액(즉, 배분 목적상 산식의 분모)에서 제외됨. 총액(및 분모)으로부터 제외는 그 보고 회계연도에 모든 UTPR 관할국의 UTPR 비율이 영(0)이라면 적용되지 않음(제2.6.4조)

Note 4.2.3: 고정사업장(도관기업의 고정사업장 포함)에 배분되는 종업원 수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관할국의 UTPR 비율 산정에 고려되어야 함. 나아가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는 제2.6.2조에 따라 두 가지 제외가 적용됨. 첫째, UTPR 관할국 내의 투자기업의 종업원 수는 관할국의 UTPR 비율 산정 목적상 제외됨(제2.6.2조 (a)항). 둘째, 도관기업의 종업원이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도관기업이 설립된 관할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구성기업-소유주인지를 불문하고 어떤 구성기업에라도 배분되어야 함(제2.6.2조 (b)항). 도관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달리 배분되지 않는다면 제2.6.2조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외되어야 함

Note 4.2.4: 고정사업장(도관기업의 고정사업장 포함)에 배분된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관할국의 UTPR 비율 산정에 고려되어야 함. 나아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제2.6.2조에 따라 두 가지 제외가 적용됨. 첫째, UTPR 관할국 내의 투자기업의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관할국의 UTPR 비율 산정 목적상 제외됨(제2.6.2조 (a)항). 둘째, 도관기업의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이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도관기업이 설립된 관할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구성기업-소유주인지를 불문하고 어떤 구성기업에라도 배분되어야 함(제2.6.2조 (b)항). 도관기업의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달리 배분되지 않는다면 제2.6.2조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외되어야 함

Note 4.2.5: UTPR 비율은 제2.6.1조에 따라 산정됨. 4.2.2의 UTPR 관할국의 UTPR 추가세액 이월이 있는 경우, 보고 회계연도에 모든 UTPR 관할국의 UTPR 비율이 0(제2.6.4조)이 아니라면, 그 관할국의 UTPR 비율은 영(0)임(제2.6.3조). 해당 란에서 보고된 UTPR 비율은 제2.6.4조의 적용 후에 산정된 UTPR 비율임

Note 4.2.6(총액): UTPR 관할국 사이에서 배분된 총 UTPR 추가세액 금액은 4.2의 각 관할국과 관련한 총 UTPR 추가세액 금액을 합한 것임

Note 4.2.7: UTPR 관할국 내 구성기업에 의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현금 조세비용은, 그렇지 않았다면 보통의 조세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세액에 더하여 UTPR하에서 납

부해야 할 세액임

Note 4.2.8: 이월 대상인 UTPR 추가세액은, 보고 회계연도에 UTPR 관할국에 배분된 UTPR 추가세액 금액과, 4.2.7에서 보고된 UTPR 관할국 내 구성기업에 의해 발생한 현금 조세비용 사이의 양(positive)의 차액임

Ⅲ. GloBE 모델규정과의 비교

□ GloBE 모델규정의 각 항목을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각 항목과 비교하여 대사함

〈표 III-1〉 GloBE 모델규정 및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비교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1장. 범위	1.1. GloBE 규칙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됨
	1.2. 다국적기업 그룹과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소재한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한 그룹을 의미함
	1.3. 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라2 계산의 기본단위로, 다국적기업 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고정사업장 등의 기업을 의미함
		<p>Part 1. 일반회계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Part 1에 GloBE 규칙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 그룹(MNE 그룹)의 일반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다국적기업 그룹의 명칭, 보고 회계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신고 구성기업과 그 관할국,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유형, 회계기준, 기능통화에 대해 기재함
		<p>Part 2. 기업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Part 2에 최종모기업과 그 외 구성기업, 그리고 제외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2.1 '최종모기업'에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기재함 ○ 2.2 '(최종모기업이 아닌) 그룹 기업들 및 JV 그룹의 구성원'에는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 그리고 제외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기재함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1.4. 최종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며,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 지분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함 		<p>- 2.2.1 '구성기업 및 JV그룹의 구성원'에는 구성기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며 2.2.2 '제외기업'에는 제외기업 및 제외기업의 변동사항 관련 정보를 기재함</p> <p>○ 2.3 '보고대상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기업 구조에 대한 변경사항'에는 기중에 기업 구조/구성기업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함</p>
	1.5. 제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는 GloBE 규칙의 적용이 배제됨 		
제2장. 과세 조항	2.1. 소득산입규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모기업인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함 하향식 접근을 적용하여 최종모기업을 시작으로 상위 모기업 관할국부터 우선적으로 소득산입규칙(IIR)을 적용함(최종모기업 소재 관할국이 IIR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상위 모기업 소재 관할국이 과세권을 행사) 부분소유 모기업: 예외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제3자가 20%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중간모기업(부분소유 모기업, POPE)의 경우 그 POPE 관할국이 추가세액을 부과함 	<p>Part 2의 표 2.2.1. '구성기업 및 JV그룹의 구성원' 중 2.2.1.11.~15. '구성기업이 부분소유 모기업(POPE)이거나 중간모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적격 소득산입규칙(QIIR)을 적용해야 하는지?'</p>	<p>□ 신고서의 Part 2 중 2.2에 최종모기업이 아닌 그룹 내 구성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기재함</p> <p>○ 신고서의 표 2.2.1의 11~15번 항목 '구성기업이 부분소유 모기업(POPE)이거나 중간모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적격 소득산입규칙(QIIR)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작성하여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모기업 관할국을 식별함</p> <p>○ 즉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 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표를 작성함</p>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2.2. IIR에 의한 추가세액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해야 하는 추가세액=제5장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소득산입비율 • 소득산입비율=구성기업의 GloBE 이익 중 제3자 귀속분을 제외한 비율 • 납부해야 하는 추가세액=제5장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소득산입비율 	Part 4 ‘추가세액 배분 및 귀속’ 중 4.1.2. ‘저세율 관할국과 관련한 IIR의 적용’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의 Part 4 중 4.1.2에 저율과세 구성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적격 IIR이 적용되는 경우 표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4.1.2의 2 (d)에서 모기업의 산입비율을 산출함 <input type="checkbox"/> 4.1.2의 3 (a)에서 산출된 산입비율에 추가세액을 곱해 모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배분대상 지분을 산출함 <input type="checkbox"/> 4.1.2의 3 (b)에 IIR 상쇄 금액을 입력함 <input type="checkbox"/> 마지막으로 (a)에서 (b)를 차감하여 (c) 모기업의 추가 납부세액을 산출함
2.3. IIR 상쇄 체계			
2.4. 비용공제부인 규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기업들의 관할국으로 과세권을 이전함(UTPR은 IIR의 보완장치) • 즉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이거나 최종모기업 관할국이 IIR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각 관할국은 ‘관할국에 배분된 UTPR 추가세액’만큼 관할국 내 구성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국내법상 조정(비용공제를 부인)할 수 있음 	Part 2의 표 2.2.1. ‘구성기업 및 JV그룹의 구성원’ 중 2.2.1.16.~18.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이 적용 가능한지?’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의 Part 2 중 2.2에 최종모기업이 아닌 그룹 내 구성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기재함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의 표 2.2.1의 16~18번 항목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이 적용 가능한지?’를 작성함
2.5. UTPR 추가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세액 산식: 모든 관할국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대비 해당 관할국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을 50%씩 가중치 두고 안분 	Part 4 ‘추가세액 배분 및 귀속’ 중 4.1.3. ‘저세율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의 Part 4 중 4.1.3에 UTPR 추가세액을 기재하며, 4.2에서 UTPR하의 추가세액을 배분함 <input type="checkbox"/> 4.1.3 표의 3번 항목 ‘해당 관할국과 관련한 총 UTPR 추가세액 금액’을 기재함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p>2.6. UTPR에 의한 추가세액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 배분비율=50%×(해당관할국 종업원 수)/(모든 관할국 종업원 수)+50%×(해당 관할국 유형자산)/(모든 관할국 유형자산) 	<p>관할국과 관련한 총 UTPR 추가세액 금액' 및 4.2. 'UTPR하의 추가세액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 표에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등을 기재하여 UTPR 비율을 정하고, 보고대상 회계연도에 귀속되는 UTPR 추가세액 금액 및 차기 연도로 이월되는 이월대상 UTPR 추가세액 금액을 산출함
제3장. GloBE 이익·손실의 산정	<p>3.1. 회계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서 일정한 조정을 거쳐 GloBE 이익·손실을 산출함 • 이때 재무회계 순이익·손실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구성기업에 대해 확정된 순이익·손실을 의미함 	<p>Part 3의 3.3. '관할국별 산정' 중 3.3.1.1. 'GloBE 이익·손실 산정'</p> <p>Part 3의 3.4. '구성기업별 산정' 중 3.4.1 'GloBE 손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Part 3에 구성기업별 및 관할국별 GloBE 이익·손실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함 ○ 3.3 '관할국별 산정'에서는 관할국별 GloBE 이익·손실 산출 내역을 기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1.1의 표 'GloBE 이익·손실 산정'에서 각 조정 항목에 대해 순 금액을 기재하고 조정 후 순 GloBE 이익·손실 금액을 산출함 ○ 3.4 '구성기업별 산정'에서는 구성기업별 GloBE 이익·손실 산출 내역을 기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1의 표 (a) '회계계정 순손익·조정'에서 각 조정 항목에 대해 증가감소 금액을 기재하고 조정 후 GloBE이익(손실) 금액을 산출함
	<p>3.2. GloBE 이익·손실을 확정하기 위한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조정을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순 조세비용 (b) 제외 배당 (c) 제외지분손익 (d) 포함된 재평가법손익 (e) 제6.3절에 따른 제외 자산과 부채의 처분손익 (f) 비대칭 외화손익 (g) 정책상 미공제비용 (h)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 변경 (i) 발생연금비용 	
	<p>3.3. 국제해운업 이익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해운이익이 있는 경우, 각 구성기업의 국제 해운이익과 적격 보조적 이익은 GloBE 이익·손실 계산 시 제외함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3.4. 주된 기업과 고정사업장 간 이익·손실의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E 규칙 목적상 (1) 주된 기업과 고정사업장 간 (2) 도관기업과 그 주주 간 이익·손실을 배분함 	Part 3의 3.4.1.b.1. (b) '주된 기업과 고정사업장 간 및 도관기업의 이익·손실의 배분 (제3.4절 및 제3.5절)'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의 Part 3의 3.4.1의 표 (b) '주된 기업과 고정사업장 간 및 도관기업의 이익·손실의 배분'에 조정 전 회계계정 순 손익, 조정의 대상, 증감, 조정 후 회계계정 순 손익 등의 내역을 기재함
3.5. 도관기업의 이익·손실의 배분			
제4장. 조정된 대상조세의 산정	4.1. 조정된 대상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반영된 당기법인세비용 중 대상조세에서 일정한 조정을 거쳐 조정된 대상조세를 산출함 Part 3의 3.3. '관할국별 산정' 중 3.3.1.2. '조정된 대상조세 산정' Part 3의 3.4. '구성기업별 산정' 중 3.4.2. '조정된 대상조세'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의 Part 3에 구성기업별 및 관할국별 조정된 대상조세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함 <input type="checkbox"/> 3.3 '관할국별 산정'에서는 관할국별 조정된 대상조세 산출 내역을 기재함 - 3.3.1.2의 표 '조정된 대상조세 산정'에서 당기법인세비용에 각 조정 항목을 적용하여 조정된 대상조세 금액을 산출함 <input type="checkbox"/> 3.4 '구성기업별 산정'에서는 구성기업별 조정된 대상조세 산출 내역을 기재함 - 3.4.2의 표 (a) '회계계정의 당기 법인세비용 조정'에서 당기법인세비용에 각 조정 항목을 적용하여 조정된 대상조세 금액을 산출함
	4.2. 대상조세의 정의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4.3. 한 구성 기업에서 다른 구성기업으로 대상조세의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를 GloBE 이익·손실에 대응되도록 다른 구성기업으로 배분 	Part 3의 3.4. '구성기업별 산정' 중 3.4.2. (b) '조세의 상호 배분'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의 Part 3의 3.4.2의 (b)의 표에 대상조세의 배분 내역을 기재함 <input type="checkbox"/> 구성기업의 대상조세가 증가된 경우에 6번 란에, 감소된 경우 7번 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며 최종적으로 구성기업의 조정 후 대상조세를 8번 란에 기재함
4.4. 일시적 차이 처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비용의 회계상-세무상 인식시점 차이로 인한 일시적 차이를 이연법인세 회계를 통하여 조정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일정한 조정을 거쳐 '총 이연법인세 조정 금액'을 산출, '조정된 대상조세' 계산 시 합산함 기업회계와 유사하게 (1)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감소)는 조정된 대상조세의 감소(증가) (2)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는 조정된 대상조세의 증가(감소)로 처리 	Part 3의 3.3. '관할국별 산정' 중 3.3.2. '이연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관할국별 산정' Part 3의 3.4. '구성기업별 산정' 중 3.4.2. (c) '이연법인세비용'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의 Part 3에 일시적 차이 처리를 위한 이연법인세 조정 내역을 기재함 <input type="checkbox"/> 3.3.2 '이연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관할국별 산정' 중 3.3.2.1 '이연법인세 조정'의 표(a), (b), (c)에서는 관할국별 이연법인세 총 금액, 조정 금액, 상세 조정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3.4.2 '조정된 대상조세' 중 표 (c) '이연법인세비용'에서는 구성기업별 이연법인세 조정 내역 등을 기재함
4.5. GloBE 손실 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4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특정 관할국에 GloBE 손실 선택을 할 수 있음 GloBE 손실 선택 시, 해당 관할국에 순 GloBE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대해 GloBE 손실 이연법인세자산이 설정됨 	Part 3의 3.3.3.1.g. GloBE 손실 선택 (제4.5절)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의 Part 3의 3.3.3.1 '관할국별 선택(제 7.3.1조 이외)'의 (g)에 GloBE 손실 선택 여부를 기재하고 선택 연도와 철회 연도를 기재함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4.6. 신고 후 조정 및 세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회계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 변동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가-당기 회계연도의 실효세율 산출 시 대상조세에 합산 감소-이전 회계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전 회계연도의 실효세율을 재계산 이전 회계연도 대상조세를 재계산한 결과,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 당기 추가세액에 가산 (제5장) 감소 변동의 금액이 일정규모(1백만유로) 이하일 경우, 재계산 대신 당기 회계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 가능 	Part 3의 3.3.2.1 이연법인세 조정 (b) 상세 조정내역 중 (j)~(k) Part 3의 3.4.2. 조정된 대상조세 중 (c) 이연법인세비용 중 (j)~(k) Part 3의 3.3.3.1 관할국별 선택 중 b. 대상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의 Part 3에 신고 후 대상조세 납부의무 변동 시 이를 기재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2.1 '이연법인세 조정' 중 표(b) '상세 조정내역' 중 (j), (k)란에 관할국별 세율 증가 및 감소로 인한 이연법인세 조정 내역을 기재함 3.4.2 '조정된 대상조세' 중 표 (c) '이연법인세비용' 중 (j), (k)란에 구성기업별 세율 증가 및 감소로 인한 이연법인세 조정 내역을 기재함 감소 변동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Part 3의 3.3.3.1 '관할국별 선택(제7.3.1조 이외)' 중 b. '대상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선택(제4.6.1조)'에 이를 기재함
제5장.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산정	5.1. 실효세율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국별 실효세율=$\Sigma(\text{각 구성기업의 조정된 대상조세})/(\Sigma(\text{각 구성기업의 GloBE 이익})-\Sigma(\text{각 구성기업의 GloBE 손실}))$ 	Part 3의 3.3.1. 관할국별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까지의 과정에서 산출한 GloBE 순이익-손실 및 조정된 대상조세 금액을 바탕으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산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의 Part3 의 3.3.1 '관할국별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에서 실효세율을 산출하고 추가세액을 산정함 실질기반 소득제외가 있는 경우 등 표의 (g)에 기재하고 초과이익 산정 시 제외함
	5.2. 추가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국별 추가세액=(최저한세율-관할국 실효세율)\times(순 GloBE 이익-실질기반 소득제외)+(가산되는 당기 추가세액)-(국내 최저한세) 	Part 3의 3.2.2. 최소 적용배제 선택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을 계산하여 IIR, UTPR에 따라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이 있는 경우 동 표의 (i)에 기재하고 추가세액 산정 시 가산함 ○ 또한 최소 적용배제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3.2.2에 기재함
5.3. 실질기반 소득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일정 비율 (5%)을 추가세액 계산 시 순 GloBE 이익에서 공제 • 제도 시행 후 10년 동안은 5%보다 높은 비율 적용(모델규정 제9장 참조) 	
5.4.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회계연도의 실효세율이 재계산되면서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당기 추가세액에 가산함 	
5.5. 최소 적용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1) 평균매출액 1천만유로 미만 및 (2) 평균 순 GloBE 이익 1백만 유로 미만인 관할국은 추가세액 영(0)으로 간주 	
5.6. 소수지분 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모기업의 지분율이 30% 이하인 구성기업들은 별도의 다국적기업 그룹인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 	
제6장. 기업 사업구조개편 및 소유 구조	<p>6.1. 그룹 합병 및 분할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또는 기업) 합병·분할 시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매출액 기준은 다음 금액이 7.5억유로 이상인 경우 충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 합병 전 회계연도: 각 그룹(기업)의 (연결) 매출액의 합계 (2) 분할: 분할 후 1번째 회계연도: 해당 회계연도 연결매출액, 분할 후 2~4번째 회계연도: 분할 후 2개 회계연도 이상 연결매출액 	<p>Part 1. 일반회계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Part 1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반적인 정보를 기재하며, 그룹 합병 및 분할 시에는 모델규정 제6.1절에서 설명한 연결매출액 기준을 적용함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p>6.2. 다국적기업 그룹에(서) 편입·편출되는 구성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의 직간접 이전에 따라 대상기업(target)이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구성기업이 아니게 되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이익·손실 및 조정된 대상조세만을 고려함 	<p>Part 3의 3.3.1.1. 'GloBE 이익·손실 산정'</p> <p>3.4.1. 'GloBE 손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 그룹에(서) 편입 또는 편출되는 구성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신고서의 Part 3에 반영함 ○ Part 3의 3.3.1.1 'GloBE 이익·손실 산정' 표의 (t) 항목에 관할국별 정보를 기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이연법인세 정보는 3.3.2 '이연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관할국별 산정' 중 표(b)의 (l) 항목 '다국적기업 그룹에(서) 편입·편출되는 구성기업'에 기재함 ○ Part 3의 3.4.1 'GloBE 손익'의 표의 (t) 항목에 구성기업별 정보를 기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이연법인세 정보는 3.4 '구성기업 산정' 중 표(a)의 (t) 항목 '다국적기업 그룹에(서) 편입·편출되는 구성기업 - 제3.2.11조 및 제6.2절'에 기재함
<p>6.3. 자산과 부채의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처분구성기업(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은 처분이익·손실을 GloBE 이익·손실에 포함하고, (2) 취득구성기업(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른 취득구성기업의 자산·부채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GloBE 이익·손실을 계산 • 이때, 제6.3.4조에 따라 신고 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자산과 부채 금액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할 수 있음 	<p>Part 3의 3.3.1.1. 'GloBE 이익·손실 산정'</p> <p>3.4.1. 'GloBE 손익'</p> <p>3.4.3. '구성기업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서의 Part 3에 기재함 ○ Part 3의 3.3.1.1 GloBE 이익·손실 산정 중 표의 (e) 항목 '(e) 제6.3절에 따라 제외된 자산과 부채의 처분손익 - 제3.2.1조 (e)항'에 관할국별 정보를 기재함 ○ Part 3의 3.4.1 'GloBE 손익' 중 표의 (e) 항목 '(e) 제6.3절에 따른 제외 자산과 부채의 처분손익 - 제3.2.1조 (e)항'에 구성기업별 정보를 기재함 ○ 신고 구성기업이 자산과 부채 금액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선택하는 경우, 이를 3.4.3 '구성기업 선택'의 표의 (e) 항목 '(e) 공정가액 선택'에 기재함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p>6.4. 공동기업(J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 그룹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의 경우 이를 별도의 다국적기업 그룹인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 • 추가세액 발생 시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의 주주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들은 제2장에 따라 추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즉 GloBE 규칙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연결)되는 기업이 대상이나, 공동기업은 지분법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됨에도 예외적으로 GloBE 규칙 적용 	<p>Part 2. 기업 구조</p>	<p>□ 신고서의 Part 2에서는 (최종모기업이 아닌) 그룹 기업들 및 JV그룹의 구성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p> <p>○ 또한 Part 2의 2.1 '최종모기업'에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다수 모기업 다국적기업 그룹인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각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이 표를 작성하도록 함</p>
	<p>6.5 다수 모기업 다국적기업 그룹</p>		
제7장. 조세중립성 및 분배제도	<p>7.1. 도관기업인 최종모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모기업이 도관기업이거나 배당공제제도(주주에게 분배한 만큼 과세이익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GloBE 이익은 주주 지분에 귀속되거나 분배되는 금액만큼 차감 조정됨 	<p>Part 3의 3.3. '관할국별 산정'</p> <p>3.4. '구성기업별 산정'</p>	<p>□ 제7.1절 및 제7.2절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신고서의 Part 3에 기재함</p> <p>○ 관할국별 정보는 신고서의 3.3에 기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1.1 'GloBE 이익손실 산정'의 (u) 항목과 (v) 항목 - 3.3.1.2 '조정된 대상조세 산정'의 (l) 항목과 (m) 항목 - 3.3.2.1 '이연법인세 조정'의 표(b)의 (m) 항목과 (n) 항목 <p>○ 구성기업별 정보는 신고서의 3.4에 기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1 'GloBE 손익' 중 표(a)의 (u) 항목과 (v) 항목
	<p>7.2. 배당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최종모기업</p>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1 'GloBE 손익' 중 표(d) '제7.1절 또는 제7.2절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GloBE 이익 조정' - 3.4.2 '조정된 대상조세' 중 표(a)의 (l) 항목과 (m) 항목 - 3.4.2 '조정된 대상조세' 중 표(c) '이연법인세비용'의 (m) 항목과 (n) 항목
7.3. 적격 분배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율을 충족하는 수준까지의 '간주 분배세액'을 조정된 대상조세에 추가하되, 이후 4년 이내에 실제 분배되지 않으면 다시 차감 조정하여 실효세율 재계산(recapture) 	Part 3의 3.3. '관할국별 산정' 3.4. '구성기업별 산정'	<input type="checkbox"/> 제7.3절의 적격분배세제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신고서의 Part 3에 기재함 <input type="checkbox"/> 관할국별 정보는 신고서의 3.3에 기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1.2 '조정된 대상조세 산정'의 (n) 항목 '적격분배세제' - 3.3.3.2 '제7.3.1조 선택'에서 표(a)와 표(b)를 기재 <input type="checkbox"/> 구성기업별 정보는 신고서의 3.4에 기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2 '조정된 대상조세' 중 표(a)의 (n) 항목 '적격분배세제' 	
7.4. 투자기업의 실효세율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1~3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 • (1) 투자기업의 실효세율을 관할국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국가별 통산 원칙의 예외, 관할국 내 다른 투자기구들과는 합산) • (2) 구성기업-주주가 지분에 대해 매년 시가평가 방식에 따라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시 투자기업을 도관기업으로 처리 가능 	Part 3의 3.4.3. 구성기업 선택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의 3.4.3 '구성기업 선택'의 표에서 (c)항목에 7.5절 관련 선택을, 제7.6절 관련 선택을 기재	
7.5. 투자기업의 도관기업 선택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7.6. 과세분배 방식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구성기업-주주가 분배에 대해 최저 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시 과세분배방 식 적용 가능 		
제8장. 행정	8.1. 신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구성기업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 나, (1) 최종모기업 또는 (2) 그룹이 지 정한 구성기업이 대신하여 신고 가능 (최종모기업 또는 지정구성기업의 관할 국과 구성기업의 관할국 간 유효한 정 보교환협정이 있는 경우) • 다국적기업 그룹 구조 및 각 구성기업 의 관할국, 실효세율과 추가세액 계산 에 필요한 정보, 관할국별 추가세액 등 정보 포함 필요 • 표준양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5 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 	Part 1의 1.2. 신고 구성기업의 식별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의 Part 1 중 1.2 '신고 구성기업의 식별' 이하의 표에 신고 구성기업이 누구인지 식별하여 기재함
	8.2. 세이프하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조건 만족 시 해당 관할국 추가세 액 영(0)으로 간주 	Part 3의 3.2.1 세이프하버 관할국 선택	<input type="checkbox"/> 세이프하버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Part 3의 3.2 '관할국에 대해 적용되는 관할국 별 예외 (추가세 액이 영(0)으로 감소)' 중 3.2.1 '세이프하버 관 할국 선택'에 기재함
	8.3. 행정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은 합의된 행정지침대로 GloBE 규 칙 적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9장. 경과 규정	9.1. 경과단계 조세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연도의 실효세율은 구성기업의 회 계상 반영되어 있는 이연법인세자산·부 채를 고려하여 계산 • 이때 한 관할국의 경과연도는, 다국적 기업 그룹이 해당 관할국과 관련하여 	Part 3의 3.3.2.3. '경과 규정'	<input type="checkbox"/>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연도의 경우 Part 3의 3.3.2.3 '경과 규정' 이하에 정보를 기재하며, (a) 제9.1.1 조 및 제9.1.2조의 적용, (b) 제9.1.3조의 적용의 표에 정보를 기입함

〈표 III-1〉의 계속

GloBE 모델규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GloBE 규칙 범위에 드는 첫 번째 회계 연도를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연도의 실효세율 계산 시 고려되는 이연 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표 (a)에 기재함 ○ 2021년 11월 30일 이후부터 경과연도 개시 이전에 구성기업 간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표(b)에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기재함
	9.2. 실질기반 소득제외에 대한 경과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공제율은 23년 이후 10년간 급여/유형자산 각각에 대해 변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3. 국제활동 초기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한 UTPR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이하 관할국에 소재하고, 5개 관할국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해외진출 초기단계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5년간 비용공제 부인규칙 적용 제외 	Part 3의 3.5. 국제 활동 초기 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활동의 초기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한 특례인 모델규정 제9.3절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서 Part 3의 3.5를 작성함 ○ 제9.3절이 적용되고 어떤 그룹 기업도 적격 IIR을 적용할 의무가 없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추가세액이 영(0)으로 감소되는 관련 관할국에 대하여 신고서의 3.1부터 3.4까지 보고할 필요가 없음 ○ 어떤 그룹 기업도 적격 IIR을 적용할 의무가 없고 UTPR 목적으로 모든 관할국의 추가세액이 영(0)으로 감소되는 경우, 신고서의 4장은 보고될 필요가 없음
	9.4. 신고의무에 대한 경과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연도에는 신고기한이 15개월에서 18개월로 완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10장. 정의		해당 없음(정의)	해당 없음(정의)	해당 없음(정의)

자료: GloBE 모델규정 및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IV. OECD 의견 수렴

1.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OECD는 2022년 12월 20일, 필라2와 관련하여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담은 이행 패키지(implementation package)를 발표함¹⁶⁾
 -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패키지는 (1) 세이프하버 가이드스 (2) 표준 신고서식 (3) 조세확실성 절차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OECD는 2023년 2월 3일까지 서면공청회를 진행하여 약 80여 개의 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함
 - 또한 OECD는 2023년 3월 16일, 온라인 의견 수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관련 회계법인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함
 - OECD는 업계·전문가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온라인에 공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요 의견을 다음에 요약하여 정리함

16) OECD, "Further progress on two-pillar solution: OECD releases consultation document on the withdrawal of digital service taxes and other relevant similar measures under Pillar One and an implementation package for Pillar Two," 2022. 12. 20., <https://www.oecd.org/tax/beps/further-progress-on-two-pillar-solution-oecd-releases-consultation-document-on-the-withdrawal-of-digital-service-taxes-and-other-relevant-similar-measures-under-pillar-one-and-an-implementation-package-for-pillar-two.htm>, 검색일자: 2023. 3. 13.

2. 온라인 의견 수렴 회의의 주요 내용^{17), 18)}

- 먼저 OECD는 금번 발표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초안(draft)이 아닌 최초 산출물(initial output)임을 밝힘
 - 즉 이번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GloBE 모델규정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된 형식의 데이터 세트로 전환한 것임
 - 이번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목적은 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함임
 - 그러므로 발표된 의견 수렴 문서는 초안(draft return)이 아닌 논의를 위한 시작점(starting point for a discussion)이라는 점을 강조함

- OECD는 온라인 회의에서 수렴된 80여 개의 의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함
 - 우선 대부분의 의견은 보고 요건의 간소화를 요청함
 - 많은 경우 기업들은 기존 회계시스템으로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상의 데이터가 산출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만을 위해 새로이 창출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신고서 준비 및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임
 - 과세당국이 실제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민감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와 신고된 정보가 모든 이행 관할국 간 공유되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됨
 - 모든 관할국이 아닌 추가세액을 징수하는 관할국만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데이터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17) OECD, "Public consultation meeting on compliance and tax certainty aspects of global minimum tax". 2023. 3. 16., <https://www.oecd.org/tax/beps/public-consultation-meeting-compliance-and-tax-certainty-aspects-of-global-minimum-tax-16-march-2023.htm>, 검색일자: 2023. 4. 15.

18) Youtube.com, "Public Consultation meeting on compliance and tax certainty aspects of global minimum tax," Youtube, uploaded by OECD Tax, 2023. 3. 18., <https://www.youtube.com/watch?v=beGktFx0C2Q>, 검색일자: 2023. 4. 15.

- 각 구성기업(CE)별이 아닌 관할국별 정보신고서 제출을 건의함
 - 국가별보고서(CbCR)에서 수집되는 정보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현행 CbCR과 일치하도록 보고 요건을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 기존 경과 세이프하버뿐만 아니라 도입 초기 연도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경과 세이프하버를 추가적으로 건의함
 - 또한 기존 세이프하버 기간의 연장을 함께 건의함
- 온라인 회의의 첫 번째 패널로, ZF 그룹의 이전가격 담당인 Mieke Van Gorp, KPMG의 Lieke Mutsaers와 Grant Wardell-Johnson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 신고서의 간소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ZF 그룹은 현 버전의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각 구성기업(CE)별로 제출되어야 하나 다국적기업 그룹의 회계 및 운영시스템(ERP)상 이러한 방식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관할국 수준의 신고서 작성을 제안함
 - 이는 그룹 내 각 기업들은 다른 신고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각 구성기업별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내부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함
 - 이에 구성기업 수준이 아닌 관할국 수준에서의 정보신고서 제출을 제안하며, 구성기업 수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산과 관할국 수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산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 KPMG는 구체적인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며 다국적기업 그룹들이 유연함을 가지고 수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예를 들어, 실질기반 소득제외 산정 시 인건비의 경우 계약직을 포함할지 여부, 계약직 중에서도 어떤 계약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 그룹으로 하여금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는 대신 보다 보수적인 수치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함
 - 또한 실효세율을 간단히 계산하여 15% 이상의 실효세율이 산출되는 경우, “Prima facie head room”을 두어 납세협력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안함

[그림 IV-1] KPMG 발표 슬라이드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간소화 방안 예시

GIR simplification measures

Simplifications

1. Transitional simplification
2. Revenue exclusion –
 - i. Based on percentage of revenue
 - ii. Based on specific amount
3. Reasonable to assume exclusion
4. Single item threshold simplification with integrity check (e.g. for Excluded Dividends & 12 month holding period rule)

Simplification based on a single item threshold with aggregated integrity check

Step 1	Determine single item threshold for a Jurisdiction	Euro
(a)	PBT from the Qualified CBCR	10,000,000
(b)	Aggregate ITE from the Qualifi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jurisdiction (19%)	1,900,000
(c)	Adjust for (i) UTPs, (ii) non-covered taxes and (iii) items where NOT 'reasonable to assume' below single item the threshold (based on (i) & (ii))	(100,000)
	Sub-total (18%)	1,800,000
(d)	Estimate threshold Tax Expense before TUT applies (15%)	1,500,000
(e)	Prima facie 'head room' above 15% (18%-15%=3%)	300,000
(f)	Apply a 2.5% materiality factor for the tax effected single threshold	7,500
(g)	Gross-up for the single item threshold for income/expense (7,500/0.15)	50,000

Step 2	Maximum number of income / expense items whe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item falls below the single item threshold	
(a)	Take the headroom tax-effected amount in (e) divided by 15%	2,000,000
(b)	Take the single item threshold in Step 1 (g)	50,000
(c)	Maximum no. of items where 'reasonable to assume' below single threshold	40

For a jurisdiction given 'headroom' of €300,000 in tax or €2,000,000 in expenses or income you do not need to do detailed calculations for up to 40 items whe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an adverse adjusted expense or income is less than 50,000 or ITE is 7,500.

자료: OECD, "Public consultation meeting on compliance and tax certainty aspects of global minimum tax - meeting documents - presentations," 2023. 3. 16., <https://www.oecd.org/ctp/beps/public-consultation-meeting-march-2023-global-minimum-tax-presentations.zip>, 검색일자: 2023. 4. 15.

- 온라인 회의의 두 번째 패널로, MEDEF의 Tania Saulnier, Temasek의 세무 총괄인 Belinda Chan 등은 행정 및 신고 절차의 표준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먼저 MEDEF는 국가별보고서(CbCR)와 같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또한 중앙화된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룹 내 다수의 관할국이 존재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변형이 생길 수 있어 신고가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음
 - 또한 중앙화된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데이터 유출 리스크 및 데이터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신고를 1회, 그리고 중앙화하도록 제안함
 - 납세자는 하나의 관할국(주로 최종모기업 관할국)에만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

고서를 신고하고 각 관할국의 과세당국 간 신고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함

- Temasek는 각 관할국과의 관련성과 필요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분할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제안함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데이터는 모두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이며 경쟁자와 잠재 경쟁자에게 중요한 시장 정보이므로, 해당 정보가 세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정보를 분할 신고하는 방법을 a)~e)로 제안함
 - a) 추가세액 징수권을 가지는 관할국만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데이터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함
 - b)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모듈로 분할하여 각 관할국별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c) 최종모기업 관할국이 적격 GloBE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관할국과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교환하지 아니함
 - d) 부분소유 모기업인 경우 하위 구성기업의 정보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함
 - e)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최종모기업 관할국에 신고한 경우 신고서에 대한 접근은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되며 또한 공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림 IV-2] Temasek 발표 내용

GloBE Information Return (GIR) – Segmentation

Calibrate GIR Data Disclosure Only to Administer GloBE

- **Necessity to Segment**
 - ✓ Granular GIR data commercially sensitive as entity-by-entity vs. GloBE which is jurisdiction based
 - ✓ GIR shows revenue, expenses, profitability of jurisdictions attractive to competitors
 - ✓ Full GIR data excessive and unnecessary for most jurisdictions beyond UPE jurisdiction¹
- **Proposals**
 - a) Align right to receive GIR data with right to levy top-up tax.
 - b) GIR segmented into modular parts with jurisdictions receiving need-to-know information only
 - c) No GIR exchange if UPE jurisdiction has Qualified GloBE. Lead UPE jurisdiction to confirm change in GloBE status
 - d) For POPEs² only downstream Constituent Entities' info, not other parts of MNEs
 - e) Once GIR submitted to UPE jurisdiction, access to GIR via EOI³ only. Where no EOI in place, MNEs not compelled to provide GIR. No public disclosure

TEMASEK 1. Ultimate Parent Entity 2. Partially Owned Parent Entity 3. Exchange of Information 1

자료: OECD, “Public consultation meeting on compliance and tax certainty aspects of global minimum tax – meeting documents - presentations,” 2023. 3. 16., <https://www.oecd.org/ctp/beps/public-consultation-meeting-march-2023-global-minimum-tax-presentations.zip>, 검색일자: 2023. 4. 15.

- 온라인 회의 이후 OECD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와 관련하여 간소화 필요성, 정보 공개의 제한, 보고요건의 간소화 고려, 경과기간 경감조치 및 탄탄한 상호 검토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이후 절차에 대해 OECD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신고하게 되는 정보와, GloBE 규칙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과세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간 균형을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필라2와 관련하여 추후 진행 상황 및 수정될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3. 서면 의견 수렴의 주요 내용¹⁹⁾

가. KPMG

- KPMG는 우선 큰 규모의 다국적기업 그룹이 현 버전의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담긴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여 신고하려면 신고서만 수백, 수천 장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며 온라인 공청회에서 건의사항을 설명하였음
 - GloBE 규칙의 적용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모두 수집 및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당국 또한 실익이 없음을 말함
 - 또한 현행 GloBE 정보신고서의 접근방식은, 세부담액이 올바르게 산출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세액산출의 모든 단계를 기재하도록(line-by-line assessment) 하고 있어,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리스크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진신고 방식과 접근방식이 상이함을 지적함
- 첫째,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기초적인 정보만을 기재하고, 보다 상세한 데이터 및 정보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보유한 증빙 문서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는 법인세 신고 시 기초적인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CFC 서식과 유사한 접근방식이며, CFC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기본 정보만을 기재하고 세부 정보는 기업 내에서 보유하도록 함
- 둘째, 제출된 정보는 GloBE 관련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19)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Public comments received on compliance and tax certainty aspects of global minimum tax," 2023. 2. 16., <https://www.oecd.org/tax/beps/public-comments-received-on-compliance-and-tax-certainty-aspects-of-global-minimum-tax.htm>, 검색일자: 2023. 3. 13.

-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 중 일부는 납세자의 상업상 기밀 정보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며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기재한 정보는 GloBE 규칙만을 위해 제공된 특정한 정보이므로 여타 다른 세무 조치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어야 할 것임
- 셋째, GloBE 정보는 GloBE 관련 납세의무 과소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꼭 필요한 특정 주체에게만 제공되어야 함
 - 상기 두 번째 건의사항과 연결되며,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할국별 매출, 수익 등의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담게 될 것임
 - 물론 과세당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보안을 엄격히 지키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보안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구분된(segmented)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넷째, 추가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는 과도한 정확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납부할 GloBE 추가세액이 없거나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계산 과정을 거치도록 하지 않고 보다 보수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간략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예를 들어, 계약직 인건비의 경우 일일이 각각의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큼
- 다섯째, 보고 체계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이 다수의 관할국의 정보를 보고하지 않도록 해야 함
 - CbCR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GloBE 보고 체계는 하나의 다국적기업 그룹이 최종모기업의 관할국에 보고하고 해당 관할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야 함
- 여섯째, GloBE 규칙의 혼합된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신고서는 구성기업 단위가 아닌 관할국 단위에서 보고되어야 함

- 일곱째, 상기 세 번째 제안 사항에서 언급했듯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구분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룹 내에서 하나의 관할국에 적격 IIR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다른 관할국에서는 신고대상 정보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구분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일 수 있으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구분 신고서 제출 또는 통합 신고서 제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여덟째, 여러 가지 간소화 방안을 제안함
 - 1) 매출액 비중을 고려하여 제외: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관할국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은 경우, 해당 관할국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신고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범위를 축소함
 - 2) 특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외: 매출액 비중이 아닌, 일정 매출액 이하인 관할국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신고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범위를 축소함
 - 3) 잠재적 추가세액 부담액과 관련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제외: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 4) 경과기간 간소화: 시행 초기 몇 년간은 더 많이 간소화할 수 있게 하고(예, 시행 첫 3년) 이후 기간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아홉째, 경과 CbCR 세이프하버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의 CbCR 보고서를 통해 GloBE 규칙 적용을 간소화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렇게 되면 자칫 CbCR 자체가 더 엄격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 예를 들어, 2019년 11월 OECD는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수익을 CbCR상 세전손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러한 접근방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음
 - 다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회원국의 경우 CbCR상에 보고되는 손익이 중대하게 과대 계상될 수 있어 실효세율이 실제보다 낮게 산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경과 CbCR 세이프하버의 도입과 함께, 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 서 CbCR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들을 파악하고 OECD 지침을 통해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 열 번째, 영구적 세이프하버가 적용되는 경우, 영구적 세이프하버에서 요구하는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요청되지 않아야 함
 - 예를 들어, 기업 소유구조의 변경의 경우 GloBE 측면에서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현재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상의 데이터 포인트 중 추가적인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
 - 신고서의 3.3 및 3.4-관할국 및 구성기업 계산에 적용된 환율
 - 각 구성기업의 회계 사이클과 세무 사이클이 상이하더라도(예, 재무회계상 이익은 월별로 산출되나 세무상 이익은 분기별로 산출됨) 각각의 관할국에서의 기능통화가 최종모기업의 기능통화와 상이한 경우, 환차손익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실효세율의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표 IV-1〉 환율 차이로 인한 실효세율 변동 예시

월	월평균 환율 (USD/EUR)	월 세전이익 (USD)	분기별 세액 (15%, USD)	월 세전이익 (EUR)	분기별 세액 (15%, EUR)
1월	1.5	10,000	-	6,667	-
2월	1.4	10,000	-	7,143	-
3월	1.3	14,000	5,100	10,769	3,923
4월	1.4	13,000	-	9,286	-
5월	1.3	3,000	-	2,308	-
6월	1.6	3,000	2,850	1,875	1,781
7월	1.2	6,000	-	5,000	-
8월	1.1	4,000	-	3,636	-
9월	1.6	5,000	2,250	3,125	1,406
10월	1.05	19,000	-	18,095	-
11월	1.4	10,000	-	7,143	-
12월	1.3	12,000	6,150	9,231	4,731
합계		109,000	16,350	84,277	11,841
실효세율			15%		14%

자료: KPMG, *KPMG Comments to the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Pillar Two - GloBE Information Return*, February 3, 2023, p. 7.

- 이에 관할국 및 기업별 실효세율 산출은 해당 관할국에서 적용되는 기능통화로 수행하고, 관할국별 추가세액(있는 경우)을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된 통화로 환산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음

나. Siemens

- Siemens는 우선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현재 버전은 너무 광범위하며 납세자의 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서두에 밝힘
- 신고서의 간소화와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함
 - 1)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양 축소
 - KPMG와 마찬가지로 현행 버전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므로 최종 신고서는 이를 대폭 축소하여야 할 것임
 - 2) 관할국 기반의 신고서 작성
 - 필라2는 관할국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상의 정보는 관할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
 - 즉 경과 또는 영구적 세이프하버가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구성기업 데이터도 신고되지 않아야 하며, 한 관할국에서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구성기업의 어떠한 데이터도 신고되지 않아야 함
 - 이에 반해 현행 신고서의 3.4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성기업 단위의 계산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Siemens 정도 규모의 다국적기업이라면 신고서의 3.1부터 3.3까지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 양이 상당할 것이며 모든 구성기업에 대해 신고되어야 한다면 페이지의 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됨
 - 3) 경과 및 영구적 세이프하버
 - 경과 세이프하버에서 국가별보고서의 보고내용에 기반하여 간소화된 소득 및 세액 산출에 긍정적임

- 다만 이러한 간소화를 다음과 같이 확대 적용할 것을 건의함
 - ① Part 3뿐만 아니라 2.2 및 2.3과 같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다른 부분에도 간소화를 적용
 - ② 영구적 세이프하버와 유사한 양식으로 경과 CbCR 세이프하버 신고 간소화를 적용
 - ③ 최소 적용배제 선택에 대해서도 CbCR 접근방식을 적용

4) 보고대상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기업 구조 변경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그룹은 구성기업의 소유 구조 변경 시 이를 보고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상호 연계된 거래의 발생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연도 중에도 구성기업의 소유구조는 여러 번 변경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각 변경마다 하나의 행으로 정보신고서에 기재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에게도 혼란스러울 수 있음
- 또한 그룹 내부적인 변경사항은 대부분 추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보고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
- 이에 각 변경사항을 보고하기보다 사업연도 말 기준의 소유구조에 중점을 두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건의함

5) 공동기업(JV) 및 공동기업 종속기업에 관한 정보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현행 버전은 공동기업과 그 종속기업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나, 이 중 일부는 연결재무제표에 지분법으로 반영되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6) 최소 적용배제

- GloBE 모델규정의 제5.5절에 따르면 평균 GloBE 수익 및 평균 GloBE 손익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할국에서의 추가세액을 영(0)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경과 세이프하버의 간소화된 신고의무를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신고 절차 및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정보 교환 및 단일 신고처를 위한 IT 솔루션 구축을 제안함

- 신고대상 정보의 양이 방대하나, CbCR 신고 실무에서도 확인되듯이 각 개별 국가 간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부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다. EY

- 신고서와 관련하여 초기 단계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중앙화된 신고 등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을 제안함
- 일반적인 제안 사항으로 민감한 기업 정보의 보호, 시스템 설계의 안정성을 요청함
 - 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한 기업 정보로, 보고가 요구되는 정보는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하며 신고서와 연관되어 수집 및 교환된 정보와 관련하여 엄격한 비밀 유지가 보장되어야 함
 - 관할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향후 발생하는 요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비용을 위하여, 복잡한 시스템의 설계 관할국 간 일관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정성이 필수임
- 다섯 가지의 주요한 내용을 요구하였으며, 추가적인 세이프하버와 다른 간소화 방법을 개발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함
 - 중앙 집중화의 조화와 개별 신고: 신고서 제출이 중앙 집중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교환 방식(XML 스키마 등)의 개발이 신속히 완료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 교환을 통해 정보에 접근 가능한 관할국에서는 개별 신고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 정보의 분리 개발: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과태료 적용 및 정보 보호 규칙: 적격 권한있는 당국의 협의는 각 관할국이 정보 보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경과 과태료 경감 정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 신고 의무의 시기: GloBE 세금 신고의 시기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정보 신고)의 제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해야 함

- 신고 요건 이행의 상호 검토: 신고 이행과 관련하여 강화된 검토 절차를 도입해야 함

라. MEDEF(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²⁰⁾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자체의 양식 등과 관련하여 보고 의무가 부여된 정보의 항목을 줄이고 간소화된 항목 및 신고 방식을 따를 것을 제안함
- 현 상황에서 OECD가 제공한 전체 및 상세한 산출 표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보고하는 방식”의 접근법보다는 “위험 기반 방식”의 접근법이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임
 - 특히 구성기업 기반으로 광범위한 정보 항목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하여 이행 부담이 과도하며, 구성기업 기반의 정보 보고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필요함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신고서의 정보 공개가 되도록 간소화되고 상세한 정보는 서로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신고서의 정보 공개 수준과 관련하여 중간 계산의 상세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 없이 합산 금액만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구성기업별로 GloBE 수익과 조정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세액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양을 제한해야 함²¹⁾
 - 추가세액 징수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국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정보만 교환되도록 하고, 다른 관할국 내 구성기업별 상세 정보는 공유되지 않아야 함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주요 과세관청, 즉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기업의 과세관청의 주도하에 보고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강화된

20) MEDEF는 프랑스 내에서 가장 큰 기업 단체 조직으로, 17만 3천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있으며 95%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평균 인력은 47명임

21) 또한 모델규정 제3.2.8조의 세무상 연결 그룹이 있는 국가라면, 그 그룹은 하나의 구성기업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함

정보 교환 프레임워크가 가능해야 함

- 일치되고 표준화된 신고 요건이 필요하며, 나아가 최종모기업 관할국 외의 관할국이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One-Stop-Shop” 절차, 즉 주요 과세 관청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 영구적 세이프하버와 QDMTT 관련 세이프하버의 개발을 제안함

- 경과연도 이후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영구적 세이프하버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신고서 제출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사한 영구적인 CbCR 기반 세이프하버의 개발을 요청함
- QDMTT에 GloBE 모델규정의 체계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세이프하버가 포함되어야 하며, QDMTT의 산출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세액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야 함
 - 신고서 “3.2 관할국에 대해 적용되는 관할국별 예외”에서는 경과 CbCR 세이프하버의 기준 중 하나인 간소화된 경상이의 기준도 포함되어야 함

마. NFTC(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²²⁾

□ 전반적으로 신고서의 표준화, 행정적 부담 완화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과세관청에 GloBE에 따른 납부 조세 책임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다국적기업 그룹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다국적기업 그룹에 상당한 이행 부담과 민감 정보 보호 사이에서의 균형이 요구됨
- 구체적인 내용은 네 가지로 구성됨
 - 간소화: 다국적기업 그룹이 GloBE 모델규정에서 제공하는 선택을 한 번 한다면 그 선택과 관련된 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하며, 기업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요구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음

22) NFTC는 미국의 국제 교역과 투자와 관련된 기업 연합임

- 신고서 이행의 명확성: GloBE가 관할국 기반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별개의 기업별 산출 내역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개별 산출 내역은 세무조사 의 경우에만 검토되어야 하고, 신고서와 관련하여서는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이 아니라 모든 관할국이 동일하게 따라야 함
- 신고서 2.2: 각 관련 조세(QDMTT, QIIR, UTPR)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형식을 수정해야 하며, 각 산출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제한되어야 함
- 신고서 Part 3(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출): 경과 CbCR 세이프하버는 영구적 세이프하버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각 관할국별 개별 기업에 대한 상세한 산출 내역 신고는 불필요하며 당기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은 최종모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신고할 필요가 없음

바. TEMASEK²³⁾

- 신고서의 신고 내용을 간소화 또는 축소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정보 보호 또는 공개의 차원에서 단계적 공개 등을 제안함
 - 일반 제안 사항으로 신고서에 단계별로 분할된 정보 공개 체계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형식과 절차를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비밀 보호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선의로 행한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하여 영구적인 제재 면제를 제안함
 - 신고서의 설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를 제안함
 - 신고서 형식, 신고 및 정보 교환 절차의 표준화
 - 정보 공개의 단계화 또는 차별화
 - “시효기간”과 함께 입증 신뢰 제도 도입
 - 납세자의 비밀 보호에 대한 강력한 조치
 - 납세자의 참여와 함께 신고서의 주기적인 검토 도입

23) TEMASEK는 싱가포르 정부가 전체를 소유한 글로벌 투자기업임

- 과납 GloBE 세액의 효과적인 환급 또는 공제
- 영구적인 제재 면제
- 기타 동일한 통화 및 언어 사용 및 관련 있는 소유 구조 변경만 공개(신고서 2.3)

V. 시사점

1. GloBE 모델규정과의 비교 검토 결과

- 본 보고서의 제4장에서는 GloBE 모델규정의 각 항목과 OECD가 제안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항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음
 - 전반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OECD 제안 버전은 GloBE 모델규정의 각 항목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일부 누락된 항목이 존재하나 신고서 자체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은 아니며 신고서의 작성 요령에 설명을 추가하면 됨
 - 예를 들어,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GloBE 모델규정의 제9장 ‘경과 규정’ 중 제9.2절 ‘실질기반 소득제외에 대한 경과특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이에 대한 설명지침을 신고서 작성 요령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 마찬가지로 GloBE 모델규정의 제9.4절 ‘신고의무에 대한 경과특례’에서는 경과연도에 대한 신고기한을 15개월이 아닌 18개월로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작성 요령 등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 또한 GloBE 모델규정의 제2.1절 ‘소득산입규칙 적용’에서 납세의무자는 최종모기업을 시작으로 중간모기업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향식 접근: Top-down approach)하여 결정되나, 예외적으로 부분소유 모기업(Partially-Owned Parent Entity, POPE)인 경우 해당 POPE 관할국에서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연결 최종모기업이 상장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상장 자회사가 해당 관할국에 추가세액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음
 - 이때 GloBE 모델규정의 제8.1절 ‘신고의무’에 따라 적격 권한 당국 간 협정

(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QCAA)이 발효되어 있는 경우 최종모기업 관할국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신고하게 되면 해외 자회사인 POPE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지침이 없으므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신고서의 배치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예를 들어,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GloBE 모델규정의 “제9장 경과규정” 중 “제9.3절 국제활동 초기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한 UTPR 적용 제외” 부분을 신고서의 Part 3 중 가장 마지막 항목인 3.5. 이하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제9.3절 국제활동의 초기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추가세액이 영(0)으로 감소되는 관련 관할국에 대해서는 신고서 Part 3의 3.1부터 3.4까지 모두 보고 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관할국의 추가세액이 영(0)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Part 4까지 작성되지 않아도 됨
 - 이에 따라 신고서의 3.5에 작성하도록 한 국제활동 초기단계 관련 정보를 신고서의 앞단으로 이동하여 이러한 경과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개선 방향 제안

- OECD가 제안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양식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현재의 OECD의 신고서 양식은 GloBE 모델규정에 기초하여 필요한 정보 항목을 제공한 것으로 항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임
 - OECD 관계자 또한 의견청취 절차에서 간소화 등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이후 개정된 신고서 양식이 발간될 가능성이 높음

가. 신고 항목 및 요건의 간소화

- 신고서 항목을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의 주된 요청 사항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간소화임
 - 기업이 갖춘 기존의 회계시스템만으로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산출하기 쉽지 않음
 - 신고서 자체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우려됨
 - 신고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 결과, 선택권 행사 여부 등만을 기재하여 추가세액 징수 여부만을 판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다국적기업 그룹은 필요한 내역을 보관하도록 하여 추후 상세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신고서 2.3은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기업 구조의 변경 사항을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 구조의 변경 사항이 추가세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구조 변경의 중요성이 상이한데 이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 구조 변경을 보고하는 것은 다국적기업 그룹에 지나친 부담임
 - 현재 신고서는 변경(기업 구조)의 유효일자, 변경 전·후 GloBE 목적상 지위, 변경 전·후에 해당 구성기업(또는 다른 기업) 또는 JV그룹의 구성원에 대해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들, 변경 전·후 해당 구성기업 또는 JV그룹 구성원에 대해 보유한 소유지분(백분율)을 보고하도록 함
 - 기업 구조 변경의 중요성 또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 변경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추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만 보고하도록 하거나, 기업 구조의 규모를 기준으로 보고 여부를 달리하는 것을 의미함

-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회계연도 말 또는 추가세액 신고 및 납부 시점에서 최종적인 변경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 신고서 3.4에서는 구성기업별로 GloBE 손익, 선택사항, 조정된 대상조세 등 상세한 산정 방식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국별로 필요한 신고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동일한 하나의 다국적기업 그룹 내라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관할국의 신고 체계에 따라 다른 신고서를 준비하는 부담이 있음
 - 각국이 OECD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과 유사하게 제공하더라도 각 신고서의 사용 언어는 물론 통화도 차이가 날 것임
 - 추가세액의 부담 여부는 관할국별로 달라지며, 해당 관할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구체적 산출 내역은 필요한 경우 관할국 과세관청의 상세한 증빙 자료 추가 제출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구할 수 있기 때문임
- 신고를 증양화 및 일원화하는 방안도 있으며, 핵심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과세관청이 필요한 정보를 다른 과세관청과 정보 교환의 형식으로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함
 - 핵심 과세관청은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관할국의 과세관청으로 할 수 있으며, 핵심 과세관청이 수집한 정보를 추가세액을 징수해야 하는 다른 관할국의 과세관청과 교환하도록 함
 - 다국적기업 그룹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른 관할국과의 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제됨
- 한편 국가별보고서에 제공하는 정보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제공하는 정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가별보고서에 일치하는 정보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경과 CbCR 세이프하버의 영역으로 추가세액 위험이 없는 국가에만 적용 가능한 방식임
 - CbCR과 GloBE는 범위 등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가별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만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예를 들어, GloBE는 그룹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그룹 내 기업 또는 GloBE 범위의 제외기업 등 국가별보고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별 보고 필요성이 있음

나. 기업의 정보 보호 절차 마련

-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 중 상당 정보가 기업의 민감정보에 해당할 우려를 표시하면서, 신고서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 항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기업의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는 수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기업은 일반적으로 그 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정보주체에 해당하지 않음²⁴⁾
 - 기업이 그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영업 비밀 또는 기업 외부에 노출하기를 원치 않는 내부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기업의 내부 정보라고 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²⁵⁾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 법적으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다른 기업 또는 주체가 침해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정보를 특정한 보호의 대상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움
- 기업의 내부 정보와 관련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다른 곳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민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상·신념 등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법적 개념상 기업의 민감정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25)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함

- 과세관청은 해당 정보를 수집한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기업의 특정한 내부 정보 또는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 보호할 만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기업 및 관할국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음
 - 기업의 정보 또한 정보 보호의 대상으로 일반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특정 내부 정보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기업의 보고 정보의 공유를 제한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물론 해외 자회사들의 재무 현황 및 손익 정보 등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하는 여러 항목이 납세자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이미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정보가 공시되고 있음
 - 다만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보고되는 해외 자회사의 세무 관련 정보들은 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러한 정보들은 구분하여 보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다국적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공유되는 관할국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관할국 내 부서 간에도 정보 공유에 한계를 두는 방법이 있음
 - 정보의 공유는 그 정보가 필요한 관할국, 예를 들면 추가세액을 징수하는 관할국 사이에서만 공유되도록 함
 - 과세관청의 관할 부서에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 신고서는 해당 부서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정보가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 부과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신고서를 통한 정보 수집은 각 과세관청이 해당 관할국 내 구성기업과 관련하여 추가세액 발생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나, 그러한 검증은 정보 수집 단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적인 단계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함
 - 신고서의 정보 기재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율에 맡기게 되므로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이 집중해야 함

- 신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세무 조사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다국적기업 그룹에 선택권을 부여하여 통합 신고서가 아니라 구분 신고서를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구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현재와 같은 통합 신고서가 아니라 구분 신고서 또는 단계별 신고서를 제공하여, 구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보의 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선택 사항으로 하는 이유는 각 다국적기업 그룹에 따라 통합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으며, 구분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신고서 제출 시점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다. 신고 관련 세이프하버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경과 CbCR 세이프하버(Transitional CbCR · Safe Harbour)’ 선택에 따른 신고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 표 3.2.1 ‘세이프하버 관할국 선택’은 경과 CbCR 세이프하버에 선택을 위하여 그 적용 대상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정보를 보고하고, 표 3.2.2. ‘최소 적용배제 선택’은 GloBE 모델규정 제5.5절의 최소 적용배제(de minimis exclusion)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함
 - 현재까지는 경과 CbCR 세이프하버에 대하여만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어 있고, 영구적 세이프하버, 즉 간소화된 산정 방식을 제공하는 세이프하버는 아직 논의 중임
- GloBE 모델규정 제8.2절은 세이프하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이프하버 지침을 별도로 발간하여 경과 CbCR 세이프하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구적 세이프하버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안내함²⁶⁾

26) OECD, *Safe Harbours and Penalty Relief: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Pillar Two)*, 2022b, p. 7.

- 경과 CbCR 세이프하버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저위험 관할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국가별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추가세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과 기간²⁷⁾ 동안만 적용되는 단기적인 제도임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의 세전 수익(Revenue) 또는 이익(손실)과 다국적기업의 재무제표의 법인세 비용(대상조세가 아닌 조세와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후의 비용)을 기초로 하여 세이프하버 해당 여부를 판단함
- 경과기간 동안 해당 관할국에서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그 관할국의 추가세액은 영(0)으로 간주함
 - 관할국에서 매출이 1천만유로 미만이며, 세전 이익(손실)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최소 기준)
 - 간소화된 실효세율이 경과세율 이상인 경우(간소화된 실효세율 기준)
 - 세전 이익이 실질기반 적용제외(SBIE) 금액 이하인 경우, 이익을 공제한 후에는 초과이익이 없는 경우(경상이익 기준)
- 경과 CbCR 세이프하버는 국가별보고서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수익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영구적 세이프하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국가별보고서는 추가세액 납부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국가별보고서 자체가 GloBE 세액 부담 여부 또는 추가세액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아님
- 경과 CbCR 세이프하버는 일정한 경우 추가세액 자체를 영(0)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간소화된 산정 방식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름
- 영구적 세이프하버를 도입하여 간소화된 산정 방식이 적용되도록 하거나, 신고서 제출 자체의 세이프하버를 도입하여 정보 제공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수 있음

27)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2028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는 제외함

- 영구적 세이프하버의 개발을 통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정 방식이 간소화되므로, 필요한 정보의 내용도 적을 것이며 이에 따라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양도 적게 될 것임
- 신고서 제출 자체의 세이프하버를 도입하여 추가세액을 자체적으로 산출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현재와 같이 구성기업별로 제출할 필요는 없도록 함
 - 과세관청 입장에서 신고서를 통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기업, 경과 특례 등과 같이 추가세액이 경감되도록 작동되는 요건이고,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검증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음

라. 상호 검토

- 신고서 자체에 대하여도 상호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여 관할국이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 및 요건이 적절한지, 그 신고가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인세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GloBE 규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관할국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산출된 추가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 신고 단계에서부터 특정 기업의 신고를 완화하여 주거나 신고 방식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여러 국제적 합의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음
- 신고서의 상호검토는 일반적인 GloBE 모델규정 이행의 상호검토 절차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신고서의 국내 입법 수준 및 신고 이행의 용이성 등이 될 수 있음
 - 각국이 신고서 양식을 국내법으로 입법함에 있어서 OECD가 제안하는 양식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하도록 할 것인지 문제되고, 최대한 동일한 양식을 각국이 적용해야 필요한 정보 교환 등의 절차가 유용하게 될 것임

-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관할국에서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 구성기업 등이 신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기업 그룹이 최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하기 어려움

참고문헌

KPMG, *KPMG Comments to the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Pillar Two – GloBE Information Return*, February 3, 2023.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2021.

_____,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 Pillar Two – GloBE Information Return*, 2022a.

_____, *Safe Harbours and Penalty Relief: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Pillar Two)*, 2022b.

BEPS 대응지원센터, <https://www.kipf.re.kr/beps/>

OECD, <https://www.oecd.org/tax/beps/>

부록 A1. 정보 항목(Data points)

1. 일반회계정보

1.1 다국적기업 그룹 및 보고 회계연도

1. 다국적기업 그룹의 명칭	2. 보고 회계연도 개시일	3. 보고 회계연도 종료일	4. 수정신고 여부
			예/아니오

1.2 신고 구성기업의 식별

1. 최종모기업이 신고 구성기업인 경우	2. 신고 구성기업의 명칭	3. 납세자식별번호(TIN)	4. 역할	5. 신고 구성기업이 소재한 관할국

1.3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반회계정보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유형)	2.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된 재무회계기준	3.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된 기능통화

2. 기업구조

2.1 최종모기업

1. 최종모기업 관할국	
2. 적용대상 규칙	
3. 최종모기업 명칭	
4. 최종모기업의 납세자식별번호(TIN)	
5. 신고 관할국에서의 최종모기업의 납세자식별번호(TIN) (다른 경우, 및 있는 경우)	
6. GloBE 목적상 지위	
7. 최종모기업이 제외기업인 경우 - 유형	

2.2 (최종모기업이 아닌) 그룹 기업들 및 JV 그룹의 구성원

2.2.1 구성기업 및 JV 그룹의 구성원

변경여부	1. 이전 보고대상 회계연도 대비 변경 여부	예/아니오
관할국	2. 관할국	
	3. 적용대상 규칙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식별	4.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명칭	
	5. 납세자식별번호(TIN)	
	6. 신고 관할국에서의 납세자식별번호(TIN) (있는 경우)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소유 구조	7. GloBE 목적상 지위	
	구성기업, JV 또는 JV 종속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각 기업에 대하여:	
	8. 유형	
	9. 납세자식별번호(TIN) (구성기업들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들에 대해)	
구성기업이 부분소유 모기업(POPE)이거나 중간모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적격 소득산입규칙(QIIR)을 적용해야 하는지?	10. 보유 중인 소유지분 (백분율)	
	11. 모기업 지위	
	12. 제2.1.3조의 예외사항의 적용여부	예/아니오
	13. 제2.1.3조의 예외사항 적용시, 및 소득산입규칙(IIR) 적용대상인 또다른 중간모기업이 있는 경우, 다른 중간모기업의 식별(TIN)	
	14.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소유지분의 20% 이상을 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가?	예/아니오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이 적용가능한지?	15. 제2.1.5조의 예외사항 적용시, QIIR을 적용해야하는 다른 부분소유 모기업(POPE)의 정보(TIN)	
	16. 국제활동의 초기 단계(제9.3절)가 적용가능한지?	예/아니오
	17. 구성기업(JV 그룹의 각 구성원)과 관련하여 QIIR을 적용해야하는 모기업들의 소유 지분 총계 (백분율)	
	18. 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이 (각 JV 그룹 구성원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배분대상 추가세액)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QIIR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들의 소유 지분 (각 JV 그룹 구성원) 총계보다 큰지?	예/아니오

3.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산정

3.1 관할국의 성격

1. 관할국의 명칭	
2. 하위그룹의 식별 (있는 경우)	

3.2 관할국에 대해 적용되는 관할국별 예외 (추가세액이 0으로 감소)

3.2.1 세이프하버 관할국 선택

a. 경과 CbCR 세이프하버 선택의 범위	
1. 경과 CbCR 세이프하버 선택 - 적용가능한 기준	
2. 총 수익	
3. 세전 이익(손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거 후) 법인세 비용	

3.3.1.1 GloBE 이익(손실) 산정

1. 제3.4절 및 제3.5절의 배분 이후 합산 회계산 순이익·손실 (관할국 내 모든 구성기업들)	
조정	순 금액
(a) 순 조세비용 - 제3.2.1조 (a)항	
(b) 제외배당 - 제3.2.1조 (b)항	
(c) 제외지분손익 - 제3.2.1조 (c)항	
(d) 포함된 재평가법손익 - 제3.2.1조 (d)항	
(e) 제6.3절에 따른 제외 자산과 부채의 처분손익 - 제3.2.1조 (e)항	
(f) 비대칭 외화손익 - 제3.2.1조 (f)항	
(g) 정책상 미공제비용 - 제3.2.1조 (g)항	
(h) 전기오류 - 제3.2.1조 (h)항	
(i) 회계정책변경 - 제3.2.1조 (h)항	
(j) 발생연금비용 - 제3.2.1조 (i)항	
(k) 주식기준보상 - 제3.2.2조	
(l) 정상가격 조정 - 제3.2.3조	
(m) 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 - 제3.2.4조	
(n) 실현 원칙을 사용한 손익 선택 - 제3.2.5조	
(o) 조정된 자산이익 선택 - 제3.2.6조	
(p) 그룹내 재무약정 - 제3.2.7조	
(q) 동일한 관할국내의 그룹내 거래 선택 - 제3.2.8조	
(r)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되는 보험회사 법인세 - 제3.2.9조	
(s) 지급하거나 지급할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기타자기자본에 귀속되는 자본의 증감 - 제3.2.10조	
(t) 다국적기업 그룹에 편입 및 편출되는 구성기업 - 제3.2.11조 및 제6.2절	
(u) 도관기업인 최종모기업 GloBE 이익의 감소 - 제3.2.11조 및 제7.1절	

(v) 배당공제제도 대상인 최종모기업 GloBE 이익의 감소 - 제3.2.11조 및 제7.2절	
(w) 과세분배 방식 선택 - 제3.2.11조 및 제7.6절	
(x) 국제해운업이익	
2. 관할국의 순 GloBE 이익·손실	

3.3.1.2 조정된 대상조세 산정

1. 제4.3절의 배분 후 대상조세와 관련한 합산 당기 법인세비용 (관할국의 모든 구성기업)	
조정	순 금액
(a) 회계계정에서 세전이익에 비용으로 인식된 대상조세 - 제4.1.2조 (a)항	
(b) 제4.5.1조에 따라 인식되었거나 사용된 GloBE 손실 이연법인세 자산 - 제4.5.3조와 결합된 제4.1.2조 (b)항	
(c) 과거 회계연도에 대상조세 차감금액으로 처리된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상조세 - 제4.1.2조 (c)항	
(d) 당기법인세비용 감소로 기록된 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 - 제4.1.2조 (d)항	
(e) GloBE 손익에서 제외된 이익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 제4.1.3조 (a)항	
(f)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소로 기록되지 않은 비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 - 제4.1.3조 (b)항	
(g) 당기법인세비용에 대한 조정으로 처리되지 않은 환급 또는 세액공제되는 대상조세(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 제외) - 제4.1.3조 (c)항	
(h)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제4.1.3조 (d)항	
(i) 3년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당기법인세비용 - 제4.1.3조 (e)항	
(j) 신고 후 조정 - 제4.6.1조	
(k) 순자산이익 또는 순자산손실과 관련된 대상조세 - 제3.2.6 조	
(l) 도관기업인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감소 - 제7.1절	
(m) 배당공제제도에 따라 감소된 최종모기업의 GloBE 이익에 대한 대상조세 - 제7.2.2 조	
(n) 적격 분배세제- 제7.3절	
(o) 과세분배 방식 선택 - 제7.6절	
(p) 총 이연법인세 조정 금액- 제4.1.1조 (b)항	

(q) 국내 조세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GloBE 이익손실에 포함된 금액과 관련된 자본 또는 기타포괄이익에 기록된 대상조세의 증가 또는 감소 - 제4.1.1조 (c)항	
2. 조정된 대상조세	

3.3.1.3 실질기반 소득제외 산정 (적용가능한 경우)

(a) 실질기반 소득제외 총액

인건비 적용배제		유형자산 적용배제		합계
1. 관할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적격 종업원의 관련된 적격 인건비	2. 보고 회계연도에 대해 적절한 이익 가산율의 적용	3. 관할국에 소재한 관련된 적격 유형 자산의 장부가액	4. 보고 회계연도에 대해 적절한 이익가산율의 적용	5. 실질기반 소득제외

(b) 실질기반 소득제외 목적상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고정사업장으로서의 배분

1. 관련된 적격 인건비	2. 관련된 적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3. 고정사업장의 관할국	4. 고정사업장으로 배분된 관련된 적격 인건비	5. 고정사업장으로 배분된 관련된 적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c) 실질기반 소득제외 목적상 도관기업의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배분

1. 관련된 적격 인건비	2. 관련된 적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3. 구성기업 소유자(또는 JV 그룹 구성원)의 관할국	4. 구성기업 소유자에게 배분된 (또는 제외된) 적격 인건비	5. 구성기업 소유자에게 배분된 (또는 제외된) 적격 유형자산 장부가액

3.3.1.4 관할국의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 (있는 경우)

(a) 제4.1.5조 이외의 목적상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

1. 관련 조항	2. 관련 연도	3. 기존 보고 기준 또는 재계산 기준	4. 순 GloBE 이익 손실	5. 조정된 대상조세	6. 실효세율	7. 초과이익	8. 추가세율	9. 추가세액	10.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
		a. 기존 보고							
		b. 재계산							

(b) 제4.1.5조의 목적상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

1. 관할국의 조정된 대상조세 (음수인 경우)	
2. 관할국의 GloBE 손실	
3. 예상 조정된 대상조세	
4.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	

3.3.1.5 적격 내국 최저추가세(QDMTT)

1. 재무회계기준	
2. QDMTT 금액	

3.3.2 이연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관할국별 산정

3.3.2.1 이연법인세 조정

(a) 요약

1. 이연법인세 비용 금액	
2. 이연법인세 비용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 - 제4.4.1조, 이때:	
3. 재계산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의 증가임	
4. 재계산이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의 감소임	
5. 총 조정금액	
6. 총 이연법인세 조정 금액	

(b) 상세 조정내역

1. 이연법인세 비용 조정순 금액	순 금액
(a) GloBE 이익·손실에서 제외된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 제4.4.1조 (a)항	
(b) 미공제 발생계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제4.4.1조 (b)항	
(c) 미청구 발생계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 제4.4.1조 (b)항	
(d)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평가조정 또는 회계상 인식 조정 - 제4.4.1조 (c)항	
(e) 세율 변경과 관련된 재측정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비용 - 제4.4.1조 (d)항	
(f) 세액공제의 발생 및 사용에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 제 4.4.1조 (e)항	
(g) 해당 회계연도 동안 납부된 미공제 발생계정 또는 미청구 발생계정 - 제4.4.2조 (a)항	
(h) 회계연도 동안 납부된 재계산 이연법인세부채- 제4.4.2조 (b)항	
(i)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손실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 제4.4.2조 (c)항	
(j) 세율 감소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 제4.6.2조	
(k) 세율 증가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 제4.6.3조	
(l) 다국적기업 그룹에(서) 편입·편출되는 구성기업 - 제6.2절	
(m) 도관기업인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 제7.1절	
(n)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제7.2절	
2. 총 조정금액	

(c) 손실 소급

	1. 손실 소급에 귀속되는 간주 이연법인세자산	2. 손실 소급과 관련된 대상조세 환급
a. 전기 회계연도 X에 귀속되는 금액		
b. 전기 회계연도 Y 등에 귀속되는 금액		
c. 총 금액		

3.3.2.2 재계산 메커니즘

1. 회계연도	2. 제 4.4절에 따라 고려된 이연법인세 부채	3. 추인된(reversed) 이연법인세 부채						4. 이연법인세 부채 유보잔액
		이전 네번째 회계 연도	이전 세번째 회계 연도	이전 두번째 회계 연도	이전 첫번째 회계 연도	보고 회계연도	총 합계	
이전 다섯번째 회계연도								
이전 네번째 회계연도		적용 불가						
이전 세번째 회계연도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이전 두번째 회계연도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이전 첫번째 회계연도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적용 불가			
보고 회계연도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적용 불가	

3.3.2.3 경과 규정

1. 경과연도	
---------	--

(a) 제9.1.1조 및 제9.1.2조의 적용

이연법인세 부채	
1. 경과연도 기초의 이연법인세 부채	2.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 부채 (적용가능한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			
3. 경과연도 기초의 이연법인세 자산	4.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 부채 (적용가능한 경우)	5. 제9.1.2조에 따라 제외된 항목으로 부터 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	6. GloBE 목적상 고려된 이연법인세 자산

(b) 제9.1.3조의 적용

1. 처분 기업의 관할국	2. GloBE 목적상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	3. 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는 GloBE 목적상 이전된 자산과 관련하여 결정됨

3.3.3 관할국별 선택 (해당하는 경우)

3.3.3.1 관할국별 선택 (제7.3.1조 제외)

1. 연단위 선택		<input type="checkbox"/>
a. 종합자산이익 선택 (제3.2.6조)		<input type="checkbox"/>
b. 대상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선택 (제4.6.1조)		<input type="checkbox"/>
c. 실질기반 소득제의 미적용 선택 (제5.3.1조)		<input type="checkbox"/>
2. 5개년 선택	3. 선택연도	4. 철회연도
d. 주식기준보상 선택 (제3.2.2조)		
e. 실현 원칙 선택 (제3.2.5조)		
f. 그룹내 거래 선택 (제3.2.8조)		
5. 기타 선택	6. 선택연도	7. 철회연도
g. GloBE 손실 선택 (제4.5절)		

3.3.3.2 제7.3.1조 선택

1. 간주 분배세 선택 (제7.3.1조)	□
------------------------	---

(a) 제7.3절의 재계산 매커니즘

1. 회계연도	2. 제7.3.2조에 따라 확정된 간주 분배세	3. 납부 또는 사용된 간주 분배세				4. 간주 분배세 재계정 계정 잔액
		이전 세번째 회계 연도	이전 두번째 회계 연도	이전 첫번째 회계 연도	보고 회계연도	
이전 네번째 회계연도						
이전 세번째 회계연도		적용 불가				
이전 두번째 회계연도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이전 첫번째 회계연도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적용 불가		
보고 회계연도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적용 불가	적용 불가

(b) 제7.3.7조의 적용

1. 전기 회계연도 조정된 대상조세의 감소 [A]	2. 증분 추가세액 [B]	3. 처분 재계산 비율 [C]

3.4 구성기업별 산정

3.4.1 GloBE 손익

(a) 재무회계 순 이익 손실 조정

1.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TIN)		
2. 제3.4절 및 제3.5절의 배분 후 재무회계 순 이익손실 조정	증가	감소
(a) 순 조세비용 - 제3.2.1조 (a)항		
(b) 제외 배당 - 제3.2.1조 (b)항		

(c) 제외지분손익 - 제3.2.1조 (c)항		
(d) 포함된 재평가법손익 - 제3.2.1조 (d)항		
(e) 제6.3절에 따른 제외 자산과 부채의 처분손익 - 제3.2.1조 (e)항		
(f) 비대칭 외화손익 - 제3.2.1조 (f)항		
(g) 정책상 미공제비용 - 제3.2.1조 (g)항		
(h) 전기오류 - 제3.2.1조 (h)항		
(i) 회계정책변경 - 제3.2.1조 (h)항		
(j) 발생연금비용 - 제3.2.1조 (i)항		
(k) 주식기준보상 - 제3.2.2조		
(l) 독립기업원칙 조정 - 제3.2.3조		
(m) 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 - 제3.2.4조		
(n) 실현원칙을 사용한 이익손실 선택 - 제3.2.5조		
(o) 조정된 자산 이익 선택 - 제3.2.6조		
(p) 그룹내 재무약정 비용 - 제3.2.7조		
(q) 동일한 관할국의 그룹내 거래 선택 - 제3.2.8조		
(r)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되는 보험회사 세액 - 제3.2.9조		
(s) 납부되었거나/납부되어야 하거나 지급되었거나/지급되어야 하는 기타자기자본 분배 귀속 지분의 증가/감소 - 제3.2.10조		
(t) 다국적기업 그룹에(서) 편입 편출되는 구성기업 - 제3.2.11조 및 제6.2절		
(u) 도관기업인 최종모기업의 GloBE 이익 감소 - 제3.2.11조 및 제7.1절		
(v) 배당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최종모기업의 GloBE 이익 감소 - 제3.2.11조 및 제7.2절		
(w) 과세분배 방식 선택 - 제3.2.11조 및 제7.6절		
(x) 국제해운업이익 - 제3.3절		
3.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의 GloBE 이익(손실)		

(b) 주된기업과 고정사업장 사이 및 도관기업으로부터의 손익 배분 (제3.4절 및 제3.5절)

1. 해당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 또는 무국적 구성기업 (TIN)	2. 조정 전 회계계정 순 손익	3. 조정의 대상	4. 다른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 (TIN)	5. 다른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 구성원의 관할국 (ISO)	6.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증가	7.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감소	8. 조정 후 회계계정 순 손익

(c) 국외 조정

1.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 (TIN)	2. 조정의 대상	3. 다른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 구성원 (TIN)	4. 다른 구성기업의 관할국 (ISO)	5.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증가	6.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감소

(d) 제7.1절 또는 제7.2절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GloBE 이익 조정

1. 해당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 (TIN)	2. 감소 대상	3. 소유지분 보유자 또는 배당 수익자의 정보 (note 참조)	4. 직접 보유 소유지분 (비율)	5.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감소

3.4.2 조정된 대상조세

(a) 회계계정의 당기 법인세비용 조정

1.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 (TIN)		
2. 제4.3절의 배분 후 대상조세와 관련한 당기 법인세 비용		
조정	증가	감소
(a) 회계계정에서 세전이익에 비용으로 인식된 대상조세 - 제4.1.2조 (a)항		
(b) 제4.5.1조에 따라 인식되었거나 사용된 GloBE 손실 이연법인세 자산 - 제4.5.3조와 결합된 제4.1.2조 (b)항		
(c) 과거 회계연도에 대상조세 차감금액으로 처리된 불확실한 세무상 지위에 대한 대상조세 - 제4.1.2.조 (c)항		
(d) 당기법인세비용 감소로 기록된 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 - 제4.1.2조 (d)항		
(e) GloBE 손익에서 제외된 이익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 제4.1.3조 (a)항		
(f)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소로 기록되지 않은 비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 - 제4.1.3조 (b)항		

(g) 당기법인세비용에 대한 조정으로 처리되지 않은 환급 또는 세액공제되는 대상조세(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 제외) - 제4.1.3조 (c)항		
(h) 불확실한 세무상 지위와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제4.1.3조 (d)항		
(i) 3년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당기법인세비용 - 제4.1.3조 (e)항		
(j) 신고 후 조정 - 제4.6.1조		
(k) 순자산이익 또는 순자산손실과 관련된 대상조세 - 제3.2.6 조		
(l) 도관기업인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감소 - 제7.1절		
(m) 배당공제제도에 따라 감소된 최종모기업의 GloBE 이익에 대한 대상조세 - 제7.2.2 조		
(n) 적격 분배세제- 제7.3절		
(o) 과세분배 방식 선택 - 제7.6절		
(p) 총 이연법인세 조정 금액- 제4.1.1조 (b)항		
(q) 국내 조세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GloBE 이익손실에 포함된 금액과 관련된 자본 또는 기타포괄이익에 기록된 대상조세의 증가 또는 감소 - 제4.1.1조 (c)항		
3. 조정된 대상조세		

(a) 조세의 상호 배분

1. 해당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 기업 또는 무국적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 (TIN)	2. 구성기업(또는 JV 그룹의 구성원)의 조정 전 대상조세	3. 조정 대상	4. 다른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 (TIN)	5. 다른 구성기업(또는 JV 그룹의 구성원)의 관할국 (ISO)	6. 해당 구성 기업에 대한 증가	7. 해당 구성 기업에 대한 감소	8. 구성기업(또는 JV 그룹의 구성원)의 조정 후 대상조세

(b) 이연법인세비용

1. 구성기업(또는 JV 그룹의 구성원) (TIN)		
2. 이연법인세비용 금액		
3.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증가	감소
(a) GloBE 이익·손실에서 제외된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 제4.4.1조 (a)항		
(b) 미공제 발생제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제4.4.1조 (b)항		

(c) 미청구 발생계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 제4.4.1조 (b)항		
(d)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평가조정 또는 회계상 인식 조정 - 제4.4.1조 (c)항		
(e) 세율 변경과 관련된 재측정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비용 - 제4.4.1조 (d)항		
(f) 세액공제의 발생 및 사용에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 제 4.4.1조 (e)항		
(g) 해당 회계연도 동안 납부된 미공제 발생계정 또는 미청구 발생계정 - 제4.4.2조 (a)항		
(h) 회계연도 동안 납부된 재계산 이연법인세부채- 제 4.4.2조 (b)항		
(i)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손실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 제4.4.2조 (c)항		
(j) 세율 감소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 제4.6.2조		
(k) 세율 증가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 제4.6.3조		
(l) 다국적기업 그룹에(서) 편입·편출되는 구성기업 - 제6.2절		
(m) 도관기업인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 제7.1절		
(n)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제7.2절		
4. 총 이연법인세 조정 금액		

3.4.3 구성기업 선택(또는 JV 그룹에 적용되는 선택)

1. 선택이 이뤄진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 (TIN)	2. 연간 선택		3. 5개년 선택			
	a. 미청구 발생계정(제4.4.7조)		b. 제외기업으로의 적용 포기 선택 (제1.5.3조)	c. 투자기업의 도관기업 선택 (제7.5절)	d. 과세분배 방식 선택 (제7.6절)	
	<input type="checkbox"/>	4. 선택연도				
		5. 철회연도				

e. 공정가액 선택 (제6.3.4조)		
1. 선택이 이뤄진 구성기업(JV 그룹의 구성원)(TIN)	2. 유발사건의 회계연도	3. 제6.3.4조 (c)항 (i)에 규정된 유발사건의 회계연도 포함 또는 5개년 포함(제6.3.4조 (c)항 (ii)에 규정)

3.4.4 국제해운업이익 제외

(a) 국제해운업이익 제외

1. 해당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의 구성원 (TIN)		
국제해운업이익	2. 범주	
	3. 수익	
	4. 원가	
	5. 국제해운업이익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	6. 범주	
	7. 수익	
	8. 원가	
	9.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	
실질기반 소득제외에 대한 영향	10. 제외된 국제해운업이익 또는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에 귀속되는 인건비	
	11. 제외된 국제해운업이익 또는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의 발생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대상 조세	12. 제외된 국제해운업이익 또는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에 귀속되는 대상조세	

(b)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 이익 제외의 관할국별 상한

1. 모든 구성기업(또는 JV 그룹의 구성원)의 총 국제해운업이익	
2. 50% 상한	
3. 모든 구성기업(또는 JV 그룹의 구성원)의 총 적격 보조적 국제해운업이익	
4. B가 A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 초과액	

3.4.5 기타 회계기준

1. 기타 회계기준에 기초한 회계제정 순손익이 있는 구성기업(또는 JV 그룹의 구성원) (TIN)	2. 인정된 또는 공인 재무회계기준
--	---------------------

3.5 국제활동 초기 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적용 가능한 경우)

1. 원래대로라면 GloBE 규칙의 범위 내에 속하였어야 할 다국적기업 그룹의 첫 회계연도의 시작일	
2. 준거 관할국	
3. 원래대로라면 GloBE 규칙 범위 내에 속하였어야 할 다국적기업 그룹의 해당 회계연도의 준거 관할국 내 유형 자산 순 장부가액	
4. 원래대로라면 GloBE 규칙 범위 내에 속하였어야 할 다국적기업그룹의 해당 회계연도에,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관할국 수	
5. 원래대로라면 GloBE 규칙 범위 내에 속하였어야 할 다국적기업그룹의 해당 회계연도에, 준거 관할국 밖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a. 관할국 b. 각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 장부가액
6. 보고 회계연도동안 다국적기업 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한 관할국의 수	
7. 보고 회계연도 동안 준거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 장부가액의 합산액	

4. 추가세액 배분 및 귀속

4.1 IIR 또는 UTPR 적용과 관련한 저세율 관할국

4.1.1 저세율 관할국의 정보

1. 저세율 관할국의 국가명(무국적 포함)	관할국 A
2. ETR 산정 범위	
3. 관할국별 추가세액	[T] =관련 선택에 따른 관할국 A의 관할국별 추가세액

4.1.2 저세율 관할국과 관련한 IIR의 적용

1. 추가세액이 배분된 구성기업	a. 저율과세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 구성원(TIN)		
	b. 저율과세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 구성원의 GloBE 이익	[A]	
	c. 저율과세 구성기업 또는 JV 그룹 구성원의 추가세액	$[C] = [T] \times [A]/[A+B+etc]$	
2. 적격 IIR 적용 의무가 있는 모기업들	a. 모기업(TIN)	[모기업 1]	
	b. 모기업 관할국	관할국 B	
	c. 다른 소유주들이 보유한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GloBE 이익 금액	[D]	
	d. 모기업의 산업 비율		
3. IIR 추가세액	a. 모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배분대상 지분		
	b. IIR 상쇄	[H]	
	c. 모기업의 납부 추가세액		

4.1.3 저세율 관할국과 관련한 총 UTPR 추가세액 금액

1. 제2.5.2조가 적용되지 않는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JV 그룹 구성원) (TIN)	
2. 제2.5.1.조에 고려되는 추가세액	
3. 해당 관할국과 관련한 총 UTPR 추가세액 금액	

4.2 UTPR하의 추가세액 배분

1. UTPR 관할국	2. UTPR 추가세액 이월	3. 종업원 수	4. 유형자산의 순장 부가액	5. UTPR 비율	6. 보고 회계연도에 귀속된 UTPR 추가세액 금액	7. UTPR 관할국 내 구성기업에 의해 발생한 추가적인 현금 조세비용	8. 이월 대상 UTPR 추가세액
합산							

세정연구 23-01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분석 및 고려사항

발 행 2023년 7월 31일

저 자 정훈·김재경·이희경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미래기획 044-866-6331

I S B N 979-11-6655-224-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